

#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of*

‘Notes on the Use of a Book’ and ‘The Comments’

- Centering on Annotate of the Twenty Kinds of Rules -

趙永來 (Cho, Young-Lae)\*\*

## ◁ 목 차 ▷

- |                           |                         |
|---------------------------|-------------------------|
| 1. 서론                     | 5. 「총목」 ‘案語’의 유형과 사례 분석 |
| 2. 「총목」 ‘凡例’의 기원과 ‘案語’    |                         |
| 3. 「총목」 「凡例二十則」의 번역과 譯注   | 6. 결론 <참고문헌>            |
| 4. 「총목」 「凡例二十則」의 구성과 서지특정 |                         |

## < 초 록 >

본고는 『四庫全書總目提要(총목)』의 ‘범례’의 역주와 함께 ‘案語’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총목』의 ‘범례’는 권두에 편재되었고, 『四庫全書』에 수록된 도서에 대한 수록의 원칙, 편목의 배열과 저록의 체제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했다. 『총목』의 ‘범례’란 ‘사고전서’의 편찬과 도서 해제의 준거를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의 청사진이다. 본고의 목적은 『총목』의 이해를 심화하고, “체계서지학”의 중국적 특성으로 불리는 “目錄學”의 특성과 핵심을 구성하는 문헌해제의 체제를 ‘범례’와 ‘안어’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凡例二十則』을 상세한 주석을 통해서 완역하고, 『총목』의 편찬체제와 저록의 수집과 분류 방법, 그리고 서목의 배열방식과 편찬과정의 대강을 밝혔다. 『凡例二十則』은 『총목』 서두에 위치해 『총목』의 전체 체제를 설명하는 일종의 ‘일러두기’에 해당한다. ‘범례’는 전서의 체제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총목』에 도서의 저술원칙, 도서의 수록기준, 著錄과 存目, 類目的 배열, 子目的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다. ‘범례’는 중국 목록학 문헌 해제의 특성 외에도 原書의 流傳을 고증하여 善本과 足本 및 通行本을 엄선한 ‘원문서지학’과 ‘형태서지학’적 요소를 모두 보유했고, 이를 통해 종합적 성격의 목록 저술인 『총목』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과제번호: 2012035670).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is815@hanmail.net)

접수일: 2012년 12월 2일 최초심사일: 2012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안어’는 ‘범례’의 기능 중에 미진한 곳을 보완, 보충하면서 「총목」의 체례를 주석의 형태로 부연 설명했다. ‘범례’를 구성하는 ‘저술사상’·‘도서변위’·‘유례논증’·‘도서해제’·‘학술기원’의 범주를 소통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기능했던 것이 바로 ‘안어’였다. 중국목록학의 구성 요소 중 ‘안어’의 역할이 다소 과소평가 되었던 원인은 아마도 고정된 체례나 사용 사례가 불규칙하고 정형적인 형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篇目·敍錄·解題·總序·小序 등이 커다란 바위로 비유한다면 ‘안어’는 이런 바위들이 더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모래와 자갈, 혹은 진흙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총목」에서 구현되고 있는 考據學의 학풍은 실은 5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안어를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안어’의 연구는 더욱 풍부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要語: 凡例, 案語, 凡例二十則, 書誌學, 「四庫全書總目提要」, 考據學

###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the “Notes on the use of a book(『凡例』)” in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四庫全書總目提要』), and al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The Comments(案語)”. The ‘Notes on the use of a book’ refer to the words that illustrate the selection standards, presentation style and content scope of the script, in front of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As the important part of “the analysis”, it account as a whole for the stylistic rules of the whole book, which shows its pros and cons. It conduce toward a better in-depth study on “the analysis” to analyse those pros and cons. In this paper, have interpreted the twenty kinds of “Notes on the use of a book” and translate with explanatory notes. “Notes on the use of a book” have a variety of functions, analysis and in many respects it was classified.

“The Comments(案語)” illustrates, supplies and researches the departments of cases attached by rules which are not explained in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The Comments” lies here and there attached to in have important contents and valus of style, which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following five aspects: interpreting or supplying “Notes on the use of a book”, and interpreting or supplying “Writing ideas”, and supplying introductions to “Analysis and commentary of the book”, and introducing “Classification of an item proving”, and interpreting to “Scholar of the origin and changes”, and supplying introductions to “authenticity of a document”. “The Comments” had a role, such as blood vessels in the body, and we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also embodying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in systematic in another way.

Key words: ‘Notes on the use of a book’, ‘The Comments’, The bibliography,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Textual research

## 1. 서론

『사고전서총목제요』(이하 『총목』으로 약칭)는 청나라 乾隆帝의 명에 의해 건륭 47년(1782) 永瑤과 紀昀 등이 200권으로 편찬한 종합적 성격의 목록서이다. 본서는 『사고전서』에 수록, 혹은 未수록한 도서를 대상으로 ‘提要’라는 해제 형식을 통해 『사고전서』의 이해와 편리의 제공을 위해 저술되었다.<sup>1)</sup> 『총목』은 正史의 『藝文志』, 『經籍志』 등 ‘史志目錄’의 규모와 수준과 크게 초월했고, 『別錄』·『崇文總目』·『直齋書錄解題』·『遂初堂書目』·『群齋讀書志』 등의 역대 관찬과 사가의 목록학적 성과를 함께 계승했다. 그리하여 『총목』은 漢代 이후에 출현한 목록서 가운데 권질의 수가 가장 풍부하고, 類目的 부류가 합당하며, 고증이 정밀하고 논평이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목』의 ‘범례’는 권두에 편재되었고, 『四庫全書』에 수록된 도서에 대한 수록의 원칙, 편목의 배열과 저록의 체례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했다. 『총목』의 ‘범례’란 『사고전서』의 편찬과 도서 해제의 준거를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본고의 목적은 『총목』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으로, “체계서지학”의 중국적 특성으로 불리는 “目錄學”의 특성과 핵심을 구성하는 문헌해제의 체례를 ‘범례’와 ‘안어’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凡例二十則』을 상세한 주석을 통해서 완역하고, 『총목』의 편찬체례와 저록의 수집과 분류 방법, 그리고 서목의 배열방식과 편찬과정을 대강을 밝히고자 한다. 『凡例二十則』에는 역대 유목의 분류와 해제에 대한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며 장점을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총목』 자체는 물론 전대의 목록 체계와 분류사상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범례’ 완역과 주석은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둘째, ‘범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안어’의 기능을 실례와 용법을 중심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1) 『총목』에 수록된 서목의 분량은 『사고전서』의 3,461種 79,309卷과 未수록된 存目 6,793種 93,550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도서 수량은 乾隆 이전의 고대 저술을 거의 포괄하는 것으로, 서목을 經·史·子·集部 등의 사부 분류법으로 배열했다. 經部는 10類, 史部는 15類, 子部는 14類, 集部는 5類 등으로 분류했다. 『총목』은 “提要”의 형식으로 四部의 각 문헌의 部類의 序論, 解題, 저서소개, 판본의 源流 등 각 방면의 내용을 상술하며 기존의 사지목록과는 달리 편목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범례’의 범주에서 ‘안어’의 구체적인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凡例二十則」을 중심으로 「총목」 편찬 과정과 저술의 목적에 투영된 청나라 초기의 학술 경향과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총목」 ‘凡例’의 기원과 ‘案語’

‘범례’란 현대적 개념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책의 첫머리에서 위치해 해당 도서를 간단한 소개, 혹은 사용 방법 및 참고 사항을 설명한 글이다. 일종의 ‘일러두기’에 해당한다. 중국 문헌학의 관점 보면 ‘범례’라는 용어는 기원적으로 史書의 저술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史官이 각종 사서를 편찬하면서 그 내용과 편찬 방법과 동기 및 체례 등을 서두에서 언급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범례’ 등장의 초기 형태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sup>2)</sup> 이런 일종의 도서 해제의 형식과 체례라는 필요성에 부응하여 출현한 것이 바로 ‘범례’이다.

‘범례’라는 것은 유구한 書誌學, 혹은 문헌학 전통의 발전 과정을 통해 비교적 오래전에 등장을 했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중국의 경우 ‘범례’란 도서 편찬과 관련하여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주로 저술의 내용 소개와 편찬과 체례 등에 대한 일러두기로 일련의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 본문의 맨 앞에 배치되었다. ‘범례’라는 용어 사용의 기원은 西晉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杜預는 학자는 「春秋經傳集解·序」에서 ‘序’와 본문을 해설한다는 맹아적 형태로 ‘凡例’라는 용어를 사용했다.<sup>3)</sup> 이후 唐代에 이르러 劉知幾는 「史通」의 「序例」에서 ‘凡例’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직 俞升(즉 幹寶)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를 깨달아 멀리 左丘明을 이어 받아 다시 ‘凡例’를 세우고 「晉紀」를 편찬하여 완성했다. (중략) 옛날 공자가 「春秋」를 편찬하면서 처음으로 ‘凡例’를 세웠으며, 左丘明은 「춘추좌전」을 지

2) 예를 들면 地方志 편찬의 역시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志書의 내용·체례·편찬 방향 등이 기본 사항을 서두에서 미리 부연 설명했다.

3) 「春秋左氏傳·序」: “其發凡以言例, 皆經國之常制, 周公之垂法, 史書之舊章.”

어 공자가 세운 ‘凡例’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sup>4)</sup>

이처럼 초기 ‘범례’는 목록학의 용어는 별개로 단행본의 고적 문두에 위치해 해당 도서의 요지와 체례, 기술 방법 등에 대해서 해설했다.

역대 목록서에 등장한 ‘범례’의 기원은 『七志』에서 시작되었다. 『隋書·經籍志』에 의하면 『칠지』에 처음으로 “9篇의 條例를 두어서 卷首에 편재했다”<sup>5)</sup>라 했다. 이에 대해 余嘉錫은 ‘九篇條例’는 현재의 ‘凡例’이고, 이는 사지목록의 ‘大序’에 해당한다고 했다.<sup>6)</sup> 余慶蓉 역시 이를 편찬목적 및 사상, 자료수집과 도서 분류 원칙을 수록한 ‘總序’나 ‘類序’로 파악했다.<sup>7)</sup> 阮孝緒가 저술한 『七錄·序』<sup>8)</sup>에 이르러 ‘序’는 목록서의 독립된 체례로 자리를 잡았고, 大序의 명칭은 唐나라 시기 毋甕의 『群書四部錄』에서는 ‘序例’로, 송대의 『崇文總目』에서는 ‘敍錄’으로, 남송시기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서는 ‘序例’ 등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鄭樵의 『通志·藝文略』에서 ‘凡例’와 유사한 ‘凡目’으로 불렸고, 명대의 『永樂大典』에서 이르러 비로소 ‘凡例’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었다.

『총목』에 ‘凡例’를 설치한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程千帆은 ‘범례’는 『총목』 전체의 ‘序’라고 했다. 즉 “(범례는) 전체 서목에 대한 ‘序’이고, 전체 목록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한서·예문지』의 ‘序’가 전체 문장의 ‘序’과 같은 이치이다. 『총목』은 ‘序’ 대신에 ‘범례’를 두었는데, 이는 전대의 ‘序’와 성격은 동일하다”<sup>9)</sup>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범례’가 전대 사지목록에 ‘大序’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李致忠은 “『총목』은 史志目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시대의 藏書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범례’에서

4) 『史通·序例』: “唯令升(幹寶)先覺, 遠述丘明, 重立凡例, 勒成『晉紀』。(中略)史無例, 則是非莫准。昔夫子修經, 始發凡例。左氏立傳, 顯其區域。”

5) 『隋書·經籍志』: “九篇條例, 編於卷首之中。”

6) 余嘉錫, 『目錄學發微』(巴蜀書社, 1991), 57.

7) 余慶蓉, 王晉卿 공저, 南台祐, 宋日基 공역, 『中國目錄學思想史』(태일사, 2009), 84-85.

8) 南朝 梁代 阮孝緒가 편찬한 목록서로 원본은 이미 산실되고 『廣弘明集』에 대강의 내용이 남아있다.

9) 程千帆, 『校讎廣義·目錄編』(齊魯書社, 1998), 46.

언급한 군서의 선별, 분류방법, 部의 원칙 등을 「한서·예문지」와 「수서·경적지」의 總序와는 비교할 수 없다. 서목 편찬사와 관련해 도서 선별의 준거, 분류방법, 部의 편재원칙을 분명히 하려고 ‘범례’를 설치한 것이다<sup>10)</sup>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시기와 목록서의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大序’는 사지목록의 발전과 편찬의 분업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고, ‘凡例’는 체례의 특성이 세분화며 독립된 기능을 보유했던 것이다. ‘大序’가 ‘범례’로 변화한 것은 어쩌면 목록학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필연적인 귀결로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범례’의 기원은 사지목록의 ‘大序’에 기원해 유래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案語’란 저자가 독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며 알리는 방식인데, 현대적 개념으로는 말하면 ‘注釋’에 해당한다. 이런 형태의 주석은 주로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혹은 특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안어’란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附注’는 기능상 ‘안어’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특히 正史에 수록된 史志目錄인 「한서·예문지」와 「수서·경적지」는 ‘附注’의 형식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안어’의 사용은 이미 고대시기 부터 등장해서 北齊시기 「顏氏家訓」에도 이미 ‘안어’가 사용되었다.<sup>11)</sup>

「총목」이 등장하기 이전에 ‘안어’를 본격적인 것은 南宋시기 馬端臨이 「文獻通考」를 저술하면서 부터였다. ‘안어’는 「文獻通考」에서부터 비로소 목록학의 체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원래 馬端臨의 「文獻通考·經籍考」는 ‘輯錄體’ 형식으로 저술된 뛰어난 목록서인데, 案語를 집록체와 융합시켜 자료의 출처에 설명 이외에 학술의 기원, 도서 변위의 고증, 판본과 유례의 논증에도 충분히 활용했다. 馬端臨은 「經籍考」에서 “按”을 통해 ‘안어’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2)</sup> 예를 들면 ‘按’으로 “數術”과 관련된 類目的 삭제·통합·개정·종속의 관계는 물론 학술의 전승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10) 李致忠, 「三目類序釋評」(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43.

11) 「顏氏家訓·勉學」: “「說文解字」를 참고해 보니 ‘물이란 큰 고을이나 마을에 세워 둔 것발이다’라고 했다(案, 「說文」: ‘勿者, 州里所建之旗也’).”

12) 馬端臨, 上海師範大學校古籍研究所點校, 「文獻通考·經籍考」(中華書局, 2011), 5486쪽, 5647쪽, 6087쪽, 6233쪽, 6273쪽, 6323쪽 등 ‘안어’는 다양한 類目に 걸쳐 분포했다.

다.<sup>13)</sup> 주목할 점은 『經籍考』에서처럼 ‘안어’는 주로 ‘유례(類例)’라는 분류체계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안어’는 四部 분류법의 정착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하며 발전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어’의 전통이 『총목』에 이르러 총체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그래서 『총목』 ‘범례’에 특별히 ‘안어’의 역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안어’란 전대의 목록서의 기능을 종합해서 ‘범례’가 언급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또한 ‘범례’에 미진한 부분을 주석의 형식으로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sup>14)</sup>

### 3. 「총목」, 「凡例二十則」의 번역과 譯注

『총목』의 ‘범례’는 모두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일명 ‘총목」, 「凡例二十則」이라 부른다. ‘범례’의 번역은 번역문을 먼저 앞에 두고 원문을 뒤에 배치하여 원문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역주의 원문을 각기 일정한 번호로 나열한 것은 양자를 편리하게 대조하는 것 외에도 20가지 항목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좀 더 구체적인 비교·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역주는 원문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려 했고, 번역은 필요에 따라서의 의역과 축역의 방법을 모두 사용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sup>15)</sup>

【범례① 역주】(『총목』에 수록된) 도서 卷帙의 방대함은 자고이래로 없었다. 上進된 도서는 반드시 친히 열람했고, 大綱과 서목의 기록은 모두 황상의 재가를 얻었다. (이로써) 천년 이래의 시비를 확정하고, 百家의 의혹을 해결했으며, 權衡<sup>16)</sup>으로 포편을 분명히 했다. (황상의) 사려 깊으신 御覽은 諸臣의 管蠡<sup>17)</sup>로는

13) 馬端臨, 上海師範大學校古籍研究所點校, 『文獻通考·經籍考』, 6087쪽.

14) 『총목』에서는 ‘案語’를 빈번하게 활용하면서 ‘案’으로 축약해 사용했다.

15) 『凡例二十則』 가운데 독음이 어려운 한자나 단어의 경우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한자음을 표기했고, 특히 단어의 경우는 가능한 문헌에서 사용된 사례를 함께 표기하려고 했다.

따라 갈 수 없었고, 수시로 訓示를 주시어 몽매함을 일깨워 주심을 8년 동안 하시니, 일일이 모두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매년 심중히 봉행했던 聖諭을 1卷으로 묶어 간단히 기록했다. 황상께서 고래의 이치를 살피시어 文治를 숭상하니, (『사고전서』의) 저술의 공로가 日月에 비추어 사방에 드러남에 (그래서 『총목』은) 역대 御定인 官修와는 서로 달랐다.”

- 원문①: 一, 是書卷帙浩博, 爲亘古所無.然每進一編, 必經親覽, 宏綱巨目, 悉稟天裁. 定千載之是非, 決百家之疑似, 權衡獨運, 宸鉞斯昭,<sup>18)</sup> 睿鑒高深, 迥非諸臣管蠡之所及. 隨時訓示, 曠若發蒙. 八載以來, 不能一一殫記. 謹錄歷次恭奉聖諭爲一卷, 載諸簡端, 俾共知我皇上稽古右文,<sup>19)</sup> 功媿刪述,<sup>20)</sup> 懸諸日月, 昭示方來, 與歷代官修之本泛稱御定者, 迥不相同.”

【범례② 역주】 (『총목』에 수록된) 도서는 經·史·子·集을 提綱 삼아 서명을 배열했다. 經部는 10가지, 史部는 15가지로, 子部는 14가지, 集部는 5가지의 類目으로 나누었다. 간혹 분류가 번잡하거나 자질구레한 것은 다시 子目으로 나누어 條理가 분명하도록 했다. 서명을 수록할 때는 시대 순서로 나열했고, 역대 帝王의 저작은 『수서·경적지』의 체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서두에 배치했다. 역대 왕조의 聖制와 황상의 저술은 古例에 따라 모두 서두에 배열했다. 황상께서는 공명정대 하시어 道理에 따라 합당한 義理를 구하셨다. 『四庫全書』에 고급의 도서를 수록

- 
- 16) \* 권형(權衡): 원래는 저울을 지칭했으나 후에 ‘法度’나 ‘準則’을 지칭한다. 『莊子·胠篋』: “爲之權衡以稱之.”
  - 17) \* 관려(管蠡): ‘管中窺天’의 약자로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내다본다는 뜻으로 협소한 소견과 식견을 지칭한다. 일명 ‘管窺’·‘管見’·‘管蠡’라고도 불린다. 『莊子·秋水』: “是直用管窺天, 用錐指地也, 不亦小乎?”
  - 18) \* 곤월(袞鉞): ‘袞’이란 황제가 上公에게 수여했던 의복으로 이는 褒賞의 의미를 갖는다. ‘鉞’이란 고대의 병기로 청동으로 만든 둥근 모양의 비교적 큰 도끼를 지칭하고, 殷周 시기에 유행했다. 즉 병기와 刑具로 사용되면서 ‘鉞’이라 했고, 여기서는 처벌과 폄하를 지칭한다. ‘곤월’이란 ‘포핍’의 뜻인데, “袞鉞斯昭”이란 상벌이나 포핍을 분명히 밝힌다는 뜻이다.
  - 19) \* 계고우문(稽古右文): 稽考는 ‘고찰하다’·‘과약하다’는 뜻으로 『尙書·堯典』: “日若稽考” 등이 있다. ‘右文’의 ‘右’는 숭상, 중시의 뜻으로, 우문이란 ‘문치의 숭상’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 20) \* 공비산술(功媿刪述): 후대로 전한다는 뜻. 『論語·述而』에서 “述而不作”이라고 했는데 산술은 후에 ‘저술’을 지칭한다. 건륭황제의 『사고전서』 저술 공로는 공자의 六經의 편찬과 필적한다는 뜻이다.

한 뜻은 千秋의 귀감을 준거로 삼고자 함이지, 결코 과거의 태평성대를 헛되이 추존함에 있지 않다. (그리하여) 각별히 분류 항목을 명명해 淸나라 이전의 도서를 분류했다. 이런 황제의 결정은 그 뜻이 합당하고 이치 역시 뛰어나 四庫의 館臣이 한마디의 말로 추앙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원문②: 一, 是書以經·史·子·集提綱列目. 經部分十類, 史部分十五類, 子部分十四類, 集部分五類. 或流別繁碎者, 又分析子目, 使條理分明. 所著錄諸書, 各以時代爲次. 其歷代帝王著作, 從『隋書·經籍志』例, 冠各代之首. 至於列朝聖制·皇上御撰, 揆以古例, 當弁冕全書. 而我皇上道秉大公, 義求至當, 以「四庫」所錄包括古今, 義在衡鑒<sup>21)</sup>千秋, 非徒取尊昭代,<sup>22)</sup> 特命各從門目, 弁于國朝諸書之前. 此尤聖裁<sup>23)</sup>獨斷, 義愜理精, 非館臣所能仰贊一詞者矣.

【범례③ 역주】 전대시기 도서를 소장하는데 선별함이 없었고, 그래서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돌과玉石이 함께 있는 듯했다. (그렇다고) 특별히 도서 수록에 적당한 차례도 없었다. 지금 詔書를 내려 고적을 구하고 각별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도서의) 장단을 하나하나 분별해 엄격하게 선택했다. 진상된 도서는 모두 목록에 기재해 도서의 유실을 방지했다. 그 다음으로 장단을 고려해서 수록된 내용을 간술, 장·단점이 은폐되지 않도록 했다. 序言이 있는 경우 立訓과 맞지 않거나, 혹은 (저술) 의도가 (수록)원칙에 위배 될 경우는 書名만을 기록하고 오류를 바로 잡았다. 도서는 群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류가 전혀 없거나, 혹은 전래된 지가 오래된 것을 수집했다. 諸家의 著錄 사례를 준거로 書目도 함께 수록해 고증을 위해 예비해 두었다. (도서를) 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함께 구분한 것은 典籍이 있는 이래로 이같이 방대하고 정교한 적은 없다.

- 원문③: 一, 前代藏書, 率無簡擇, 蕭蘭並擷,<sup>24)</sup> 瑇玉雜陳,<sup>25)</sup> 殊未協別裁之

21) \* 衡鑒(衡鑒):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달고, 거울은 사물의 美醜를 비춘다는 뜻으로 시비를 변별한다는 의미. 특히 군주가 지녀야 할 신하의 현명함과 어리석음, 거짓됨과 바름을 간파하는 공정한 판단력을 비유하는 말임.

22) \* 소대(昭代):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어 太平한 세상을 지칭한다.

23) \* 성재(聖裁): 임금의 허거나 裁可를 의미한다.

義.今詔求古籍,特創新規,一一辨厥妍媸,<sup>26)</sup>嚴爲去取.其上者,悉登編錄,罔致遺珠<sup>27)</sup>;其次者,亦長短兼臚,<sup>28)</sup>見瑕瑜之不掩.其有言非立訓,義或違經,則附載其名,兼匡厥謬.至於尋常著述,未越群流,雖咎譽之咸無,要流傳之已久.准諸家著錄之例,亦並存其目,以備考核.等差有辨,旌別<sup>29)</sup>兼施,自有典籍以來,無如斯之博且精矣.

【범례④ 역주】「수서·경적지」 이후로 분류 항목은 별 차이가 없이 통용되며 각기 장·단점을 가졌고, 「총목」은 장점을 선택해서 따랐다. 예를 들어 「詔令」과 「奏議」의 항목은 「文獻通考」는 集部에 속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의 「國政」과 관련된다. 「조령」은 「구당서·경적지」에서 처음 사용되어 史部에 편재했다. 「奏議」는 「한서·예문지」에서 처음 등장해 史部에 속했다. 「東都事略」<sup>30)</sup>은 正史에도 속하지 않고, 雜史에도 속하지 않는데, 「宋史」의 예를 따라서 「別史」라는 항목에 두었다. 「香譜」<sup>31)</sup>와 「鷹譜」는 「구당서·경적지」에서 딱히 속할 곳이 없음에도 역지로 「農家」로 분류했다. 지금은 尤袤의 「遂初堂書目」에 예를 따라 「譜錄」이란 항목을 만들었다. 名家·墨家·縱橫家は 역대로 저록이 겨우 한두 가지에 불과해 冊匣을 이루기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黃虞稷의 「千頃堂書目」을 따라서 「雜家」에 나열해 항목을 하나 만들었다. 또한 「別集」은 詩만 있고 文이 없는 저술의 경우, 「文獻

- 24) \* 소란별힐(蕭蘭並擷): 蕭란 호(蒿)로 “쑥”을 지칭한다. 蘭이란 난초, 혹은 香草를 지칭한다. “쑥과 난초”라는 것은 후대에 “군자와 소인”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본문은 전대의 藏書는 좋은 책과 나쁜 책들을 구분하지 않고서 함께 뒤섞여 있었다는 뜻이다. 힐(擷)이란 캐다·따다·취하다는 뜻이다.
- 25) \* 민옥잡진(瑁玉雜陳): ‘瑁’이란 겉모양이 玉처럼 생긴 돌을 지칭한다. 옥석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荀子·法行」: “賤珉者何也? 爲夫玉之少而珉者多邪?”
- 26) \* 변궤연치(辨厥妍媸): 그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한다는 뜻이다. 본문에서는 도서의 장점과 단점을 지칭한다. 「文選·陸士衡·文部」: “混妍媸而成體, 累良質而爲瑕.”
- 27) \* 망치유주(罔致遺珠): ‘罔’은 ‘毋’의 뜻이고 ‘보석을 유실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四庫館이 엄격하게 도서를 선별해 양서의 서목을 수록해 유실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 28) \* 장단겸려(長短兼臚): 여(臚)는 배열하다, 기술하다는 뜻인데, 「爾雅」에는 “여는 기술하다(臚, 叙也)”라고 했다. 본문은 사고관의 도서 선별하여 차등의 도서의 장·단점을 기록하여 장점이 단점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을 지칭한다.
- 29) \* 정별(旌別): ‘식별’ 혹은, ‘구별하다’는 뜻이다. 「書經·畢命」: “旌別淑慝, 表厥宅里.”
- 30) \* 「동도사략(東都事略)」, 130卷: 송나라 王偁의 저술로 본서는 「총목」에서 史部 別史類에 편재했다.
- 31) \* 「향보(香譜)」, 3卷: 저자 미상의 저술로 「총목」에서는 子部 「譜錄類」에 편재했다.

「通考」는 별도로 「詩集」이란 항목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文만 있고 詩가 없는 저술은 어찌하여 별도로 「文集」을 만들지 않는 것인가. 사건에 따라서 항목을 설치한다면 헛되이 번잡하고 잡다해질 뿐이다. 지금은 諸史의 사례에 따라서 「別集」이란 항목을 설치했다. 그리고 「群經」의 자구를 해석한 저술은 「구당서·경적지」는 「經解」라 제목을 달았지만 정작 「群經」은 보이지 않았다. 朱彝尊의 「經義考」<sup>32)</sup> 역시 「群經」이라 標題했으나 역시 經解의 내용은 볼 수 없다. 徐乾學<sup>33)</sup>은 「通志堂」<sup>34)</sup>을 간행해 「總經解」라고 바꾸었지만, 何焯<sup>35)</sup>은 (이를) 허구라 힐책했다. (「총목」은) 「수서·경적지」의 항목을 취하여 「五經總義」라 했다. 이런 항목은 모두 典據 고증에 역점을 두었고, 사건이나 새로운 해석에 역점을 두지 않았다.

- 원문④: 一, 自「隋志」以下, 門目大同小異, 互有出入, 亦各具得失, 今擇善而從, 如詔令·奏議, 「文獻通考」入集部, 今以其事關國政, 詔令從「唐志」例, 入史部; 奏議從漢「志」例, 亦入史部. 「東都事略」之屬不可入正史, 而亦不可入雜史者, 從「宋史」例, 立別史一門. 「香譜」·「鷹譜」之屬, 舊志無所附麗, 強入農家, 今從尤袤「遂初堂書目」例, 立譜錄一門. 名家·墨家·縱橫家, 歷代著錄各不過一二種, 難以成帙, 今從黃虞稷「千頃堂書目」例, 併入雜家, 爲一門. 又別集之有詩無文者, 「文獻通考」別立詩集一門, 然則有文無詩者何不別立文集一門? 多事區分, 徒滋繁碎. 今仍從諸史之例, 並爲別集一門. 又兼詁群經者, 唐「志」題曰「經解」, 則不見其爲群經; 朱彝尊「經義考」

32) \* 「경의고(經義考)」: 「경의고」는 청나라 朱彝尊이 역대 경서의 存佚을 고증한 저술로 모두 300권이다. 청대 초기에 학풍은 경학을 강조하면서 考據에 치중하는 것으로 변화라는 영향에 의해 본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본서의 원래 명칭은 「經義存亡考」로 원래는 ‘存’·‘亡’ 두 가지 양분했다가, 후에 ‘存’·‘闕’·‘佚’·‘未見’이란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33) \* 서건학(徐乾學): 字는 元一로 강소의 昆山 출신이다. 康熙 9년(1670)에 진사에 급제하고 서 內閣學士 등을 역임하면서 「大清一統志」·「清會典」·「明史」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그리고 「通志堂經解」를 출간을 했고 「讀禮通考」를 편찬했다. 서건학은 풍부한 재력을 이용하여 강소와 절강 지역의 귀중한 도서 구입에 매진하여 만든 장서부가 바로 「傳是樓」이다. 본관은 모두 7개의 기둥의 규모로 다양한 도서 1만여 권을 部首의 순서대로 배열해서 보관했다. 특히 다수의 宋元시기의 刻本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본관에 소장한 도서 목록으로는 서건학의 「傳是樓宋元本書目」 등이 있다.

34) \* 「통지당(通志堂)」: 본문에서는 「通志堂經解」를 지칭한다.

35) \* 하자(何焯): 하자(1661-1722)은 청나라 초기의 학자로 字는 起瞻, 강소의 蘇州 출신이다. 康熙 42년(1703)에 진사로 임관해서 후에 戊寅殿에서 편수를 맡았다. 閻若據와 교우를 맺어 고증학에 매진했고, 저술로는 「詩古文集」·「語古齋識小錄」·「道古錄」, 「義門讀書記」 등이 있다. 그 중에 「의문독서기」는 經·史·集部의 讀書校勘記이다.

題曰“群經”，又不見其爲經解；徐乾學『通志堂』所刻，改名曰“總經解”，何焯又譏其杜撰。<sup>36)</sup>今取『隋志』之文，名之曰“五經總義”。凡斯之類，皆務求典據，非事更張。

【범례⑤ 역주】焦竑의 『國史經籍志』는 子目을 너무 많이 나누어 잡다하고 혼잡했다. (『총목』은) 그 중의 항목을 헤아려 經部의 ‘小學類’, 史部의 ‘地理’·‘傳記’·‘政書’ 3가지와 子部의 ‘術數’·‘藝術’·‘譜錄’·‘雜家’ 등의 4가지, 그리고 集部의 ‘詞曲’ 등의 類目만을 취했다. 이런 항목은 流派가 번잡해, (분류의) 실마리도 쉽게 많아진다. 신중히 (항목을) 축소해 ‘小學’은 3가지, ‘傳記’는 5가지, ‘政書’는 6가지, ‘術數’는 7가지, ‘藝術’과 ‘譜錄’은 5가지, ‘詞曲’은 5가지의 子目을 설치해 조리가 더욱 질서정연 하도록 했다. 經部의 ‘禮類’, 史部의 ‘詔令奏議類’·‘目錄類’, 子部의 ‘天文演算法類’·‘小說家類’도 자목을 약간 세분화하여 검색의 편리함을 도모했다. 기타 나머지의 번잡한 항목은 모두 삭제하거나 병합했다.

• 원문⑤: 一, 焦竑『國史經籍志』多分子目, 頗以餽飭<sup>37)</sup>爲嫌. 今酌乎其中, 惟經部之小學類, 史部之地理·傳記·政書三類, 子部之術數·藝術·譜錄·雜家四類, 集部之詞曲類, 流派至爲繁夥, 端緒易至芒如.<sup>38)</sup> 謹約分小學爲三子目, 地理爲九子目, 傳記爲五子目, 政書爲六子目, 術數爲七子目, 藝術·譜錄各爲四子目, 雜家爲五子目, 詞曲爲四子目, 使條理秩然. 又經部之禮類, 史部之詔令奏議類·目錄類, 子部之天文演算法類·小說家類, 亦各約分子目, 以便檢尋. 其餘瑣節, 概爲刪並.

【범례⑥ 역주】: 고래로 여러 사람의 서목 기록은 종종 이름을 다르게 되면서 실질이 상실되고, 예측 관계가 어긋났다. 예를 들어 『崇文總目』은 『樹萱錄』을 ‘種植’에 배치해 鄭樵의 조롱을 받았다.<sup>39)</sup> (『총목』은) 原書를 고증하여 편제를

36) \* 두찬(杜撰): 근거 없이 억지로 만들어낸 허구를 지칭.

37) \* 두정(餽飭): ‘혼잡’하고 ‘문란’하다는 뜻.

38) \* 망(芒): 까뜨라기(벼, 보리 따위의 길뜨러운 수염)를 지칭한다. 후에 매우 많다는 뜻으로 변화했다.

39) \* 역자는 『崇文總目』의 원문에서 ‘種植’과 『樹萱錄』 등의 관련 내용 색인하여 대조하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연구자의 연구결과 이는 ‘범례’의 오류는 『崇文總目』이 아닌 鄭樵의 『通志』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 任莉莉, 『『四庫全書總目』誤糾』崇文總目一例, 『中華文史論叢』(2009年第01期)를 참고.

확정했다. 예를 들면 『筆陣圖』는 이전에는 소학류에 두었지만 지금은 六書와 관련한 것만 ‘小學’에 넣었다. 『八法』<sup>40)</sup>을 언급한 저술은 필사의 공로에 불과한 것이다. 『藝術』에 배치했다. 『羯鼓錄』은 이전에는 ‘樂類’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律呂’에 관한 것만 ‘樂’으로 분류했다. 管絃과 工尺<sup>41)</sup>에 관한 저술은 세속음악에 불과한 것이라 ‘藝術’로 분류했다. 『左傳類對賦』 등은 이전에는 ‘春秋類’로 분류했다. 지금은 儷詞<sup>42)</sup>만을 취했고, 經義와 무관한 것은 ‘類書’로 분류했다. 이전에 『孝經集錄』은 ‘孝經類’에, 『穆天子傳』은 ‘起居注類’에, 『山海經』과 『十洲記』는 ‘地理類’에, 『漢武帝內傳』<sup>43)</sup>과 『飛燕外傳』<sup>44)</sup>은 ‘전기류’에 각기 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용이 황당하거나 외설스런 것은 모두 ‘小說’로 편재했다. 기타 揚雄의 『太玄經』은 이전에 ‘儒家類’에 속했지만 지금은 ‘術數’에 배치했다. 俞琰의 『易外別傳』<sup>45)</sup>은 이전에는 ‘傳記類’에 속했지만 지금은 ‘道家’에 편재했다. 『倪石陵書』의 명칭은 子書와 유사지만 실은 ‘文集’에 속한다. 陳埴의 『木鐘集』은 서명은 문집 같지만 실은 語錄에 속한다. 무릇 이러한 부류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40) \* 팔법(八法): 한자의 필획을 쓰는 있는 8가지를 방법을 한다. ① 측(側): 측은 點을 말하는데 약간 기울어지게 찍는다. ② 륵(勒): 륵은 가로획을 말한다 서서히 기필을 한 다음 빠르게 나아간다. ③ 노(努): 노는 세로획을 말하는데 弩(쇠뇌 노)라고도 한다. 기필 부분과 끝부분은 눌러서 굽게 하고 허리부분은 가늘게 긋는다. ④ 적(趯): 적은 뛰어오른다는 뜻으로 鉤(갈고리 구)를 뜻한다. ⑤ 책(策): 挑라고도 부르며 마치 채찍질 할 때 자루에서 느끼는 힘을 채찍 끝까지 느끼듯이 해야 한다. 책은 달리 우리 이름이 없지만 가벼운 ‘치침’이라고 보면 된다. ⑥ 략(掠): 략은 노략질 하다, 후리다의 뜻인데 ‘빠침’이라고 한다. ⑦ 탁(啄): 啄(졸 탁)은 마치 병아리가 모이를 쪼아 먹듯이, 또는 알을 툇 툇 깨고 나오듯이 붓을 끝까지 견제해 주어야 한다. ⑧ 책(磔): 찢을 책인데 우리말로 ‘과임’이라고 한다. 흔히 갈고리와 과임만 잘하면 그 글씨의 특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한다.

41) \* 공척(工尺): 중국 전통 음악의 음계 부호로 合·四·一·上·尺·工·凡·六·五·乙 열 가지로, 술·라·시·도·레·미·파·솔·라·시에 해당한다.

42) \* 여사(儷詞): 對偶과 같은 의미로 몇구 형식의 문장으로 수사 방식의 하나이다. 글자 수가 같고 平仄이 상반되며, 구의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어구로 상반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표현하는 문장을 지칭한다.

43) \*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 班固의 이름을 기탁한 1卷의 저술로 『총목』은 子部 ‘小說類’로 분류했다.

44) \* 『비연외전(飛燕外傳)』: 漢나라 伶元의 이름을 기탁한 저술로 『총목』 子部の ‘小說類’로 분류했다.

45) \* 『역외별전(易外別傳)』: 본서는 『총목』에서는 子部の ‘道家類’로 분류했다.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 고증을 통해 사실이 상실되지 않도록 힘썼다.

- 원문⑥: 一, 古來諸家著錄, 往往循名失實,<sup>46)</sup> 配隸乖宜. 不但「崇文總目」以「樹萱錄」入之種植, 爲鄭樵所譏, 今並考校原書, 詳爲厘定. 如「筆陣圖」之屬, 舊入小學類, 今惟以論六書者入小學. 其論八法者, 不過筆筭<sup>47)</sup>之工, 則改隸藝術. 「羯鼓錄」之屬, 舊入樂類, 今惟以論律呂者入樂. 其論管弦工尺者, 不過世俗之音, 亦改隸藝術. 「左傳類對賦」之屬, 舊入春秋類, 今以其但取儷詞, 無關經義, 改隸類書. 「孝經集錄」舊入孝經類, 「穆天子傳」舊入起居注類, 「山海經」·「十洲記」舊入地理類, 「漢武帝內傳」·「飛燕外傳」舊入傳記類, 今以其或涉荒誕, 或涉鄙猥, 均改隸小說. 他如揚雄「太玄經」, 舊入儒家類, 今改隸術數. 俞琰「易外別傳」, 舊入易類, 今改隸道家. 又如「倪石陵書」, 名似子書, 而實文集. 陳埴「木鐘集」, 名似文集, 而實語錄. 凡斯之流, 不可殫述, 並一一考核, 務使不失其眞.

【범례⑦ 역주】: (「총목」에 수록된) 여러 도서는 版刻과 筆寫 등 그 판본이 달라 신중히 ‘善本’을 선택해 서목을 작성했다. 같은 도서라도 판본에 따라 내용의 증가와 삭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足本’을 구해 서명을 기록했다. 각 도서의 서명 아래는 황제의 諭旨를 봉행하기 위해 특정한 家의 藏書 서명을 주석으로 표기해 소실되지 않도록 했다. 坊刻<sup>48)</sup>의 도서는 특정한 一家의 것만 수록할 수 없어 ‘通行本’<sup>49)</sup>으로 주석했다. 編次 선후에 대해 「한서·예문지」에는 高帝와 文帝의 저술이 諸臣의 것과 혼재했는데, 이를 특별한 체례라고는 할 수 없다. 「수서·경적지」는 帝王의 저술을 각 시대의 서두에 배치함에 義理에 합당하여 (「총목」은) 이 체례를 따랐다. 그 나머지는 도서는 대략적인 登第와 저자의 생몰 시기에 따라서 배열하거나, 간혹 왕래가 빈번했던 사람을 그 다음에 배치하기도 했다. 고증이 불가능한 도서는 각 시대 맨 마지막에 부가했다. 釋家와 道家, 그리

46) \* 순명실실(循名實實): ‘循名實實’과 동일한 의미이다. 명칭에 따라서 실제 내용을 고찰한다는 뜻으로 名實相符함을 요구한다는 뜻. 「韓非子·定法」: “술이란, 군주가 신하의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고 그 실적을 평가, 생사의 권력을 장악하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것은 군주가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術者, 因任而授官, 循名而實實, 操生殺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

47) \* 필차(筆筭): 원래는 종이와 붓을 지칭하나, 본문에서는 ‘쓰다’, ‘필사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48) \* 방각(坊刻): 관찬이 아닌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도서를 지칭한다.

49) \* 통행본(通行本): 널리 일반에게 통행되는 책을 지칭하며, ‘流布本’이라고도 부른다.

고 閩閣<sup>50</sup>)의 저술도 시대에 따라서 배열 했을 뿐, 재차 구분하기 않았다. 宦寺의 저술은 사대부와 함께 나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한서·예문지」의 小學家에는 일찍이 趙高<sup>51</sup>)의 「爰曆」과 史遊<sup>52</sup>)의 「急就」를 수록했다. (「총목」은) 이런 체례를 따라 각 항목마다 한 두 개의 저술을 수록했다. 외국인의 저술은 전사(前史)의 경우 수록된 수가 매우 희박한데, (「총목」은) 귀화하여 이미 王化된 外臣은 疆域의 경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木增<sup>53</sup>)·鄭麟趾<sup>54</sup>)·徐敬德<sup>55</sup>) 등의 저술은 시대에 따라서 배치했다.

- 원문⑦: 一, 諸書刊寫之本不一, 謹擇其善本錄之. 增刪之本亦不一, 謹擇其足本錄之. 每書名之下, 欽遵諭旨, 各注某家藏本, 以不沒所自. 其坊刻之書不可專題一家者, 則注曰通行本. 至其編次先後, 「漢書·藝文志」以高帝·文帝所撰雜置諸臣之中, 殊爲非體. 「隋書·經籍志」以帝王各冠其本代, 於義爲允, 今從其例. 其餘概以登第之年·生卒之歲爲之排比, 或據所往來倡和之人爲次. 無可考者, 則附本代之末. 釋·道·閩閣, 亦各從時代, 不復區分. 宦寺之作, 雖不宜廁士大夫間, 然「漢志」小學家嘗收趙高之「爰曆」·史遊之「急就」, 今從其例, 亦間存一二. 外國之作, 前史罕載, 然既歸王化, 卽屬外臣, 不必分疆絕界, 故木增·鄭麟趾·徐敬德之屬, 亦隨時代編次焉.

- 
- 50) \* 규각(閩閣): 일반적으로는 內室이나 여성이 거하는 침실을 지칭하지만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저술을 범칭 한다.
- 51) \* 조고(趙高): 조고(?-기원전207)는 秦나라 시기의 환관으로 진시황이 沙丘에서 사망할 때 조고와 이사(李斯)는 조서를 위조하여 장자인 扶蘇를 죽이고 대신 胡亥를 二世皇帝로 올립했다. 이후 조고는 이사를 살해하고 스스로 승상이 되면서 최초로 권력을 환관에 의해 농단되게 되었다.
- 52) \* 사유(史遊): 사유(?-?)는 西漢 元帝시기의 黃門승을 역임했는데, 당시 환관을 黃門이라고 칭했다.
- 53) \* 목증(木增): 목증(1587-1646)은 명나라 시기 納西族 출신의 문인으로 字는 長卿이며 萬曆 25년(1579) 11살 때 土知府라는 土司官을 세습했다. 저술로는 「雲邁集」, 「嘯月函」, 「山中逸集」, 「芝山集」, 「空翠居錄」, 「光碧樓選集」, 「雲邁淡墨」 등의 7부(部) 시집이 있다. 「총목」은 子부의 「雜家類」에 「운남총서」를, 「雜家類存目」에 「雲邁淡墨」 6권을 수록했다.
- 54) \* 정인지(鄭麟趾): 정인지(1396-1478)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字는 백저(伯睢)이고 太宗 13년 (1413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저술로는 「七政算內篇」, 「絲綸要集」, 「治平要覽」 등을 저술했고, 「太宗實錄」과 「高麗史」 편찬에도 참여했다. 「총목」에서는 정인지와 관련해 史部 「載記類存目」에 「高麗史」과 관련해 언급했다.
- 55) \* 서경덕(徐敬德): 서경덕(1489-1546)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호는 花潭으로 벼슬에 뜻을 버리고 학문 연구에 전념했다. 저술로는 저서로는 「花潭集」이 있다. 「총목」에는 그의 저술로 「徐花潭集」 2권을 「別集類存目」에 수록했다.

【범례⑧ 역주】 : (「총목」에 수록된) 여러 도서의 나열은 비록 시대 순을 따랐는데, 이전 도서를 箋釋한 경우는 주석한 도서 순서에 따랐고, 주석한 사람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儒家類 가운데 명대 曹端의 「太極圖述解」는 周子<sup>56)</sup>의 저술을 주석했고, 그래서 「張子全書」 앞에 배열을 했다. 淸朝의 李光地가 注解한 「正蒙」은 張子 저술의 주석이라 「二程遺書」 앞에 배치했다. 다른 예로 「史記疑問」는 「史記」 뒤에 두었고, 「班馬異同」은 「漢書」 뒤에 배치했다. 이것 역시 같은 것으로 참고의 편리를 위해서이다. 汪暉이 輯佚한 「曾子」와 「子思子」의 경우 宋代에 배열을 했고, 呂柟이 집일한 「周子鈔釋」 등의 저술은 明代에 배치했다. 이런 도서는 이전 저술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저술로 원서를 고증하고 판별한 것이라 事理가 같을 수는 없다.

- 원문⑧: 一, 諸書次序, 雖從其時代, 至於箋釋舊文, 則仍從所注之書, 而不論作法之人. 如儒家類明曹端「太極圖述解」, 以注周子之書, 則列于「張子全書」前; 國朝李光地注解「正蒙」, 以注張子之書, 則列于「二程遺書」前是也. 他如「史記疑問」附「史記」後·「班馬異同」附「漢書」後之類, 亦同此例, 以便參考. 至於汪暉所輯之「曾子」·「子思子」, 則仍列于宋; 呂柟所輯之「周子鈔釋」諸書, 則仍列于明, 蓋雖袁軼<sup>57)</sup>舊文, 而實自爲著述, 與因原書而考辨者, 事理固不可同也.

【범례⑨ 역주】 : 劉向은 秘閣의 도서를 校讎해 정리하고, 각 도서의 상황을 上奏로 아뢰었다. 일찍이 官本 목록을 간행함에 각 도서마다 序文을 기술했다. 종종 解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왕왕 그 내용이 상당히 길었고, (대다수는) 해당 도서의 始末과 源流, 전승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王堯臣의 「崇文總目」, 晁公武의 「郡齋讀書志」, 陳振孫의 「書錄解題」 등은 해제가 간략해 상세하지 못하다. 馬端臨의 「經籍考」는 群語를 수집해서 비교적 博通하게 자료를 열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충해서 貫通하지는 못했다. 지금 (「총목」은) 열거한 여러 서목은 도서마다 提要를 기술했는데, 나누면 諸篇의 서문이 되고, 합치게

56) \* 주자(周子): 周敦頤(1017-1073)를 지칭한다. 그의 字는 茂叔이며 북송시기 저명한 철학자로 성리학을 개창했고, 「太極圖說」, 「通書」 등을 저술했다.

57) \* 부집(袁軼): 산실된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한다는 뜻이다.

되면 바로 總目이 된다. 각 도서마다 먼저 작자의 爵里를 열거하여 세인의 평가를 언급했다. 다음으로 해당 도서의 득실을 고증하면서 다양한 학설의 異同을 분석했다. 또한 문자의 增削과 篇帙의 分合 등도 모두 상세히 분별해 크고 작은 것 하나 누락하지 않았다. 저자의 인품과 학문의 질박함과 허물, 國紀·國章<sup>58)</sup>의 法戒 등 장·단점과 彰癉<sup>59)</sup> 등을 밝혔고, 勸懲<sup>60)</sup>을 드러냈다. 이런 체례는 모두 황상의 결단을 계승한 것으로 고래 이래로 (전례가) 없다.

- 원문<sup>⑨</sup>: 一, 劉向校理秘文, 每書具奏; 曾鞏刊定官本, 亦各制序文. 然鞏好借題抒議, 往往冗長, 而本書之始末源流轉從疏略. 王堯臣「崇文總目」·晁公武「郡齋讀書志」·陳振孫「書錄解題」, 稍具崖略, 亦未詳明. 馬端臨「經籍考」, 薈粹群言, 較爲賅博, 而兼收並列, 未能貫串折衷. 今于所列諸書, 各撰爲提要, 分之則散弁<sup>61)</sup>諸篇, 合之則共爲總目. 每書先列作者之爵里, 以論世知人; 次考本書之得失, 權衆說之異同; 以及文字增刪·篇帙分合, 皆詳爲訂辨, 巨細不遺. 而人品學術之醇疵,<sup>62)</sup> 國紀朝章之法戒, 亦未嘗不各昭彰癉, 用著勸懲. 其體例悉承聖斷, 亦古來之所未有也.

【범례<sup>⑩</sup> 역주】: 四部 서두에 각기 總序를 두어 분류의 源流와 正變을 간술, 이를 綱領으로 삼았다. 그리고 43개로 분류한 類目<sup>63)</sup>의 서두마다 각기 小序를 두어 분리와 병합의 연속관계 변화를 상세히 기술, 條目을 분명히 했다. 만약에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체례가 합당하지 못한 (도서의) 경우 子目 끝에 두거나, 혹은 해당 조목 아래에 ‘案語’을 부가해 주석하여 通變의 이유를 밝혔다.

- 원문<sup>⑩</sup>: 一, 四部之首各冠以總序, 撮述其源流正變, 以挈綱領. 四十三類之首亦各冠以小序, 詳述其分並改隸, 以析條目. 如其義有未盡, 例有未該, 則

58) \* 국기(國紀)·국장(國章): 국가의 예법이나 법제, 혹은 문물제도 등을 지칭한다.  
 59) \* 장단(彰癉): ‘彰善癉惡’의 준말, “착한 것을 선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뜻이다. 「書·畢命」: “착한 것을 선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해 풍조와 명성을 세운다(彰善癉惡, 樹之風聲)”에서 기원했다.  
 60) \* 권징(勸懲): ‘勸善懲惡’의 준말이다.  
 61) \* 산변(散弁): 저술 속에 있는 ‘序文’이나 ‘前言’ 등을 지칭한다.  
 62) \* 순자(醇疵): ‘질박함’과 ‘허물’을 지칭한다.  
 63) \* 43개로 분류한 類目: ‘범례’<sup>②</sup>의 언급처럼 사부의 유목은 經部10개, 史部15개, 子部14개, 集部5개를 합치면 모두 44개이다. 43개의 유목은 오류로 마땅히 44개로 바로잡아야 한다.

或於子目之末，或於本條之下附注案語，以明通變之由。

【범례① 역주】: 역대 勅書의 官撰書로, 예를 들면 『周易正義』와 같은 부류는 詔書에 의한 纂修로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라 하나하나 爵里를 상술할 경우, 본문보다 내용이 많아져 번잡해지는 병폐가 있다. 그래서 (『총목』은) 成書 연월과 담당했던 임무와 성명만을 기록하고 작리를 누차 나열하지 않았다. 그리고 漢代의 陸賈·董仲舒와 唐代의 李白·杜甫·韓愈·柳宗元, 그리고 宋代의 歐陽脩·蘇軾·曾鞏·王安石 및 韓愈·范仲淹·司馬光 등의 名臣과 周敦頤·程頤·張載·朱熹 등의 저술은 후대로 계승되어 가가호호가 암송했다. 또 시골의 서당과 家僮도 모두 아는 인물일 경우 그의 작리는 중복해 기술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여러 권을 저술했을 경우 각 部가 아니라 한 部에서만 작리를 기술했다.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저술이 있다고 이미 했을 경우 중복 기술을 생략했다. 만약에 두 가지 책이 한권에 있거나, 혹은 몇 페이지 사이에 (끼어) 있을 경우 (작리)가 생략되기 쉬워서 두 번째는 이름만을 기록했다(예를 들면 명대의 戴原禮<sup>64</sup>)의 저술은 이미 朱震亨<sup>65</sup>)의 『金匱鉤玄』<sup>66</sup>)의 校補 조항과 『推求師意』 2卷<sup>67</sup>)에서 5개의 서목을 사이에 두었고 서명만 나열했다).

- 원문①: 一，歷代敕撰官書，如『周易正義』之類，承詔纂修，不出一手，一一詳其爵里，則末大於本，轉病冗繁，故今但記其成書年月·任事姓名，而不縷陳其爵里。又如漢之賈·董，唐之李·杜·韓·柳，宋之歐·蘇·曾·王，以及韓·范·司馬諸名臣，周·程·張·朱諸道學，其書並家弦戶誦，<sup>68</sup> 雖村塾

64) \* 대원례(戴原禮: 1324-1405년): 明나라 시기 저명한 궁정 의학가로 字가 原禮이고 이름은 思恭이다. 그는 부친인 戴士堯의 가업을 계승해서 의학이론을 연구했고, 洪武 19년(1386) 태조인 朱元璋이 병이 났을 때 명을 받고서 약을 통해 병을 치료했다. 이후 그는 太醫院의 御醫가 되었으며 계속해서 燕王인 朱棣의 병도 치료를 했고, 永樂 3년(1405년)에 사망했다.

65) \* 주진형(朱震亨): 주진형(1281-1358)의 字는 彦修이고 金·元시기 저명한 의학가이다. 그는 원래 儒學을 연구하다가 醫學에 전념을 했다. 『素問』, 『難經』 등의 의학서의 연구를 기초로 독자적인 의학연구 영역을 개척하여 “양(陽)은 항상 여유가 있지만 음(陰)은 늘 부족하다”는 학설을 주장하면서 인체의 陰氣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후대에 그를 ‘滋陰派’의 창시자로 불렀다.

66) \* 『김궤구원(金匱鉤玄)』: 주진형의 저술로 『총목』에서는 子部의 ‘醫家類’로 분류되었다.

67) 『추구사의(推求師意)』: 주진형의 저술로 총목에서 子部의 ‘醫家類’로 분류되었다.

童豎皆能知其爲人, 其爵里亦不復贅. 至一人而著數書, 分見於各部中者, 其爵里惟見於第一部, 後但云某人其某書已著錄, 以省重複. 如二書在一卷之中, 或數頁之內, 易於省記者, 則第二部但著其名 (如明戴原禮已見所校補朱震亨「金匱鉤元」條下, 其「推求師意」二卷, 僅隔五條之類.

【범례⑫ 역주】: 劉勰의 언급처럼 ‘뜻이 공중을 날 때는 쉽게 기이하나, 뜻이 표현될 때는 교묘해지기가 어렵다’라 했다. 儒家가 논한 經과 史의 이치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경전의 설명은 義理를 밝히는 것에 주력했다. 그러나 文字 訓詁의 이치를 모른다면 義理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史學은 褒貶을 주로 삼는데, 事蹟의 본말을 모른다면 포폄은 무엇을 근거해 결정하겠는가? 예를 들면 成風<sup>69)</sup>은 魯나라 僖公의 모친이란 사실은 분명히 「左傳」에 기록했지만 趙鵬飛의 「春秋經筌」<sup>70)</sup>은 莊公의 妾에 대해 몰라 그녀를 僖公의 妾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능히 그 禮의 득실을 정할 수 있겠는가? 劉子翼<sup>71)</sup>은 唐 나라에서 著作郎과 宏文館의 直學士을 역임했고, 이는 「구당서·유의지전」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朱子の 「通鑑綱目」에는 貞觀 원년에 隋나라 秘書인 유자익을 초빙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尹起莘의 「發明」에서 ‘각별히 隋의 관직을 미화해서 기록했다’고 했고, 陶潛<sup>72)</sup>과 함께 晉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것은 그 사람의 始終을 모르는 것이니 능히 그 사람이 어진지의 여부를 품평할 수 있겠는가? 지금 「총목」에 수록한 것은 고증과 증명, 論辯과 明確을 위주로 했으니 어찌 헛되이 공리공담으로 實學의 기풍을 돈독하게 할 수 있겠는가!

68) \* 가현호송(家弦戶誦): 집집마다 모두 지속적으로 가사를 감상한다는 뜻으로, 사람들마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거나 염두하고 있다는 뜻이다.

69) \* 성풍(成風): 魯나라 僖公의 모친으로 “成風爲魯僖公之母, 明載「左傳」”라는 내용은 「左傳」과 「公羊傳」에 보인다. 「公羊傳·文公」5년: “葬我小君成風, 成風者何? 僖公之母”라고 했다.

70) \* 「춘추경전(春秋經筌)」: 宋나라 趙鵬飛의 저술로 「총목」에서는 경부의 春秋類에 배열했다.

71) \* 유자자(劉子翼): 생몰이 불명, 字는 小心이며 常州 출신이다. 그는 수(隋)나라 大業 초기에 秘書監을 역임했고, 貞觀 연간에는 이르러 노모의 병을 구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임관했다. 著作郎과 弘文館學士 등을 역임하며 「晉書」 편찬에 참여했다.

72) \* 도잠(陶潛): 도연명(陶淵明: 365-427)을 지칭한다. 그는 東晉시기 문학가, 詩人으로 字는 淵明이며 江西의 九江출신으로 東晉 말과 劉宋 시기 田園詩人으로 유명하다.

- 원문⑫: 一, 劉勰有言, 意翻空而易奇, 詞征實而難巧.<sup>73)</sup> 儒者說經論史, 其理亦然. 故說經主于明義理, 然不得其文字之訓詁, 則義理何自而推? 論史主於示褒貶, 然不得其事蹟之本末, 則褒貶何據而定? 如成風爲魯僖公之母, 明載「左傳」, 而趙鵬飛「春秋經筌」謂不知爲莊公之妾, 爲僖公之妾, 是不知其人之名分, 可定其禮之得失乎? 劉子翼入唐爲著作郎·宏文館直學士, 明載「唐書·劉禕之傳」, 而朱子「通鑑綱目」書貞觀元年征隋秘書劉子翼不至; 尹起莘「發明」稱“特書隋官以美之”, 與陶潛稱晉一例. 是未知其人之始終, 可定其品之賢否乎? 今所錄者, 率以考證精核·論辨明確爲主, 庶幾可“謝彼虛談, 敦茲實學”.

【범례⑬ 역주】: 文章의 源流와 派別은 역대로 증가 했으며, 또한 새로웠다. 고래로 특정한 학과는 상응하는 일정한 類目을 두었다. 저자가 일정한 특정한 문체가 있다면 상응하는 일정한 ‘格’을 구비해야만 「全書」라는 명칭과 부합한다. 그래서 釋家와 道家 외에 宗教와 詞曲 등과 같은 末技는 모두 簡牘에 기재하며 수집을 멈추지 않았다. 만약 두 사람의 저술이 있다면 반드시 고증과 증명이 가능한 것을 선택했다. 經懺<sup>74)</sup>과 章咒<sup>75)</sup>는 諭旨를 엄격하게 준수해 한 글자도 수록하지 않았다. 송대 朱表의 靑詞<sup>76)</sup> 역시 이에 따라서 모두 삭제 했다. 倚聲填調<sup>77)</sup>에 기탁한 저술은 명에 따라서 모두 배제했다. 예를 들어 石孝友의 「金穀遺音」<sup>78)</sup>과 張可久의 「小山小令」<sup>79)</sup> 등은 처음부터 舊本이 전하나 잠시 목록만을 수록했다가 황상의 지시와 명을 따라 모두 삭제했다. 이는 聖人의 풍속과 교화를 숭상하고 양모해 典籍을 정리하는 의도에 이르고자 함이다. 이로 편찬이 다양했을 지라도

73) \* 본문의 내용은 「文心雕龍·神思」에 “意翻空而易奇, 言征實而難巧”를 인용한 것이다.

74) \* 경참(經懺): 불교나 도교에서 암송하는 경문(經文)을 지칭한다.

75) \* 장주(章咒):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거나 그런 方術을 쓰는 呪文을 칭한다.

76) \* 청사(靑詞): 일명 「綠章」으로도 부르며 도교에서 거행하는 행사에 올리는 祝文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駢儷體로 붉은 안료를 사용해 푸른색 종이를 사용해 작성했다.

77) \* 기성전조(倚聲填調): 음률이나 선율에 따라서 연주하거나, 혹은 연주에 사용되는 가사를 일정한 곡조에 맞추는 형식의 문장을 지칭한다. 이러한 분류의 문장은 일정한 韻律을 갖는 가사에 엄격하게 선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그 격식이 매우 엄격했다.

78) \* 「금곡유음(金穀遺音)」: 宋나라 石孝友의 저술로 「총목」에서 集部의 「詞曲類存目」에 수록했다.

79) \* 「소산소령(小山小令)」: 元나라 張可久의 저술로 「총목」에서 「張小山小令」이라 했고, 集部 「詞曲類存目」에 수록했다.

신중히 준칙을 유지해 (도서의) 취사에 엄격하지 않음이 없었다.

- 원문⑬: 一, 文章流別, 歷代增新. 古來有是一家, 卽應立是一類; 作者有是一體, 卽應備是一格, 斯協於「全書」之名, 故釋·道外教, 詞曲末技, 咸登簡牘, 不廢搜羅. 然二氏之書, 必擇其可資考證者. 其經懺章咒, 並凜遵諭旨, 一字不收. 宋人朱表青詞, 亦概從刪削. 其倚聲填調之作, 如石孝友之「金穀遺音」·張可久之「小山小令」, 臣等初以相傳舊本, 姑爲錄存, 並蒙皇上指示, 命從屏斥. 仰見大聖人敦崇風教, 厘正典籍之至意, 是以編輯雖富, 而謹持繩墨,<sup>80)</sup> 去取不敢不嚴.

【범례⑭ 역주】: 성현의 학문은 체례를 분명히 하여 실용에 이르는 것을 주로 했다. 무릇 실사구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두 卮言<sup>81)</sup>에 불과하다. 儒生의 저술은 高論을 위해 힘썼다. 陰陽과 太極은 簡牘을 篇으로 엮어서 만들었고, 이미 사람의 일에 부합하지 않는다. 九河<sup>82)</sup>를 언급하며 禹貢의 치수 흔적을 찾고자 했고, 六典을 고증해 周官의 복원하려 했고, 封建과 井田을 걸뺏으면 三代의 것이라 했다. 시세를 헤아리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黃謙<sup>83)</sup>과 같은 부류는 천하의 筆筭<sup>84)</sup>를 모두 篆書로 바꿔야 한다 했고, 顧炎武 같은 사람은 천하 언어는 모두 古音을 사용해야 한다 했으니, 황당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명나라의 曲士<sup>85)</sup>는 軍事 이야기를 좋아해 「二麓正議」<sup>86)</sup>는 구덩이를 파서 송곳을 묻어 적을 암살해야 한다 했고, 「武備新書」<sup>87)</sup>는 나무로 호랑이를 조각해서 군진에 배치해야 한다

80) \* 승묵(繩墨): 원래는 목공에서 사용되는 먹을 먹인 줄인데 후에 ‘규범’이나 ‘법도’를 비유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81) \* 치언(卮言): 입기응변식의 교묘한 말이나 두서없이 지리멸렬한 말. 허튼 소리를 지칭한다.

82) \* 구하(九河): 원래는 禹王이 치수한 황하의 9가지 지류를 지칭하거나, 황하 하류의 많은 지류의 총칭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황하를 범칭하기도 한다.

83) \* 황간(黃謙): 황간(?-?)의 字는 廷臣으로 명나라 正統 7년(1442)에 翰林院編修와 侍讀學士 등을 역임했고, 「書經集解」·「詩經集解」·「使南稿」·「叢古正義」·「蘭坡集」 등의 저술이 있다.

84) \* 필차(筆筭): 붓과 종이 혹은 서신·문장을 지칭하나 본문에서는 후자의 ‘문장’을 말한다.

85) \* 곡사(曲士): 향촌의 士인으로 식견이 고루한 사람을 비유한다. 「莊子·秋水」: “曲士不可語於道者, 屬於教也.”

86) \* 「이록적의(二麓正議)」: 명나라 湯光烈의 저술로 본서는 「총목」 集部 ‘總集類存目’에 수록되었다.

했다. 陳禹謨<sup>88)</sup>는 九邊<sup>89)</sup>의 장군과 병사는 모두 「左傳」을 읽어야 한다 했다. 무릇 이런 부류는 편벽된 異說인데, 이런空言을 제거해야 讀者는 먼 안목으로 유용한 학문을 힘써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원문⑭: 一, 聖賢之學, 主於明體以達用. 凡不可見諸實事者, 皆屬卮言. 儒生著書, 務爲高論. 陰陽太極, 累牘連篇. 斯已不切人事矣. 至於論九河則欲修禹跡, 考六典則欲復周官, 封建井田, 動稱三代, 而不揆時勢之不可行. 至黃諫之流, 欲使天下筆筭皆改篆體; 顧炎武之流, 欲使天下言語皆作古音, 迂謬抑更甚焉. 又如明之曲士, 人喜言兵: 「二麓正議」欲掘坑藏錐, 以刺敵; 「武備新書」欲雕木爲虎以臨陣; 陳禹謨至欲使九邊將士人人皆讀「左傳」, 凡斯之類, 並辟其異說, 黜彼空言, 庶讀者知致遠經方, 務求爲有用之學.

【범례⑮ 역주】: 漢唐시기 유가는 신중히 師說의 학설을 고수했다. 南宋에서 明代까지 무릇 ‘說經’과 ‘講學’, ‘論文’은 모두 각자 門戶의 주장만 내세웠다. 대략 몇 명의 사람을 위주로 (학술은) 자립하지 못한 자가 囂然<sup>90)</sup>하며 이를 조장했다. 朋黨의 무리는 吳越간 긴 애증의 세월처럼 후대로 갈수록 점차 사이가 멀어졌고, 아울러 애초 스승의 宗旨도 상실되어 전하지 않았다. 원수 관계가 지속되고 싸움이 끝나지 않음은 비록 명분은 시비의 논쟁이라 하나, 사실은 勝負의 논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심과 世道에 끼진 폐해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御題를 내린 朱弁의 「曲洧舊聞」<sup>91)</sup>을 신중히 읽었지만 洛黨<sup>92)</sup>에 유감을 느꼈다. 御題를 내린 顧憲成의 「涇臯藏稿」<sup>93)</sup>는 東林의 귀감으로 삼가 진실과 허구를 명찰해

87) \* 「무비신서(武備新書)」: 명나라 戚繼光의 저술로 본서는 「총목」 子部の ‘兵家類存目’에 속했다.

88) \* 진우모(陳禹謨): 진우모(1548-1618)의 字는 錫元이고 萬曆 연간에 임관하여 國子監의 學正과 布政司 등을 역임했고, 「北堂書鈔」의 보편에 참여했고, 저술로 「廣滑稽」 36권이 있다. 본서는 「총목」 子部 ‘小說家’의 ‘瑣語’에 배열했다.

89) \* 구변(九邊): 명나라 때 북방에 설치한 9곳의 군사 요충지로 遼東·薊州·宣府·大同·山西·延綏·寧夏·固原·甘肅 등을 지칭한다. 이곳은 각각 방어를 위해 大軍을 배치했다.

90) \* 효연(囂然): 득의양양한 모습을 지칭한다.

91) \* 「곡유구문(曲洧舊聞)」: 宋나라 朱弁의 저술로 「총목」은 子部 ‘雜家類’에 분류했다.

92) \* 낙당(洛黨): 宋나라 哲宗 元祐 연간에 王安石의 新法黨을 반대하는 조정의 반대당의 한 일파를 지칭하고, 程頤를 중심으로 朱光庭과 賈易 등의 구성원이었다. 낙당이란 명칭은 程頤가 洛陽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낙당 외에 蘇軾의 蜀黨과 劉摯의 朔黨 등이 있었다.

論에 이르렀다. 淸나라는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진실을 중상하고 거짓을 배척했다. 陽氣의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니 陰氣는 숨거나 사라져 前朝의 악한 풍속을 일소했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멀리 생각하고 깊게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실된 전적은 별도로 구분해 하나의 준거로 공정하게 했고, 경계를 두지 않고서 재앙의 맹아를 삭제해 예방했다. 詩社<sup>94)</sup>의 인기와 명성, 地志의 과장된 인물 서술, 浮詞와 塗飾은 전혀 믿을 것이 못된다. 상세히 고증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찌 公道가 창성하고, 論을 숭상하는 자가 어찌 勸戒를 알 수 있게 하겠는가?

- 원문⑤: 一, 漢唐儒者, 謹守師說而已. 自南宋至明, 凡說經·講學·論文, 皆各立門戶, 大抵數名人爲之主, 而依草附木<sup>95)</sup>者畧然助之. 朋黨一分, 千秋吳越, 漸流漸遠, 並其本師之宗旨亦失其傳. 而讎隙相尋, 操戈<sup>96)</sup>不已, 名爲爭是非, 實則爭勝負也. 人心世道之害, 莫甚於斯. 伏讀御題朱弁「曲洧舊聞」, 致遺憾於洛黨; 又御題顧憲成「涇臯藏稿」, 示炯戒于東林, 誠洞鑒情僞之至論也. 我國家文教昌明, 崇眞黜僞, 翔陽赫耀, 陰翳潛消, 已盡滌前朝之敝俗. 然防微杜漸<sup>97)</sup> 不能不慮遠思深. 故甄別遺編, 皆一準至公; 剷除畛域<sup>98)</sup> 以預消芽孽之萌. 至詩社之標榜聲名, 地志之矜誇人物, 浮辭塗飾, 不盡可憑, 亦並詳爲考訂, 務核其眞, 庶幾公道大彰, 俾尙論者知所勸戒.

93) \* 「경고장고(涇臯藏稿)」: 明나라 顧憲成 저술로 「총목」은 集部 '別集類' 분류했다.

94) \* 시사(詩社): 詩인들이 조직한 문학 단체를 지칭한다.

95) \* 의초부목(依草附木): 원래는 귀신에 의지해서 멋대로 위엄을 과시한다는 뜻이다. 후대는 타인의 권세를 빌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뜻으로 변화했다. 독립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96) \* 조과(操戈): 창을 잡는다는 뜻으로 싸움이나 전쟁을 조종한다는 뜻이다. 東漢 시대 鄭玄은 일찍이 太學에 들어가 주로 經學을 공부하면서,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馬融에게 학문을 배웠다. 하지만 훗날 집에서 혼자 경학연구에 몰두하며 실력을 쌓은 그는 何休라는 학자와 교분을 갖게 된다. 하휴에게는 「公羊墨守」·「左氏膏肓」·「穀梁廢疾」이란 3편의 저서가 있었는데, 정현은 그의 세편의 글을 읽고는, 「墨守」·「膏肓」·「廢疾」이라는 세편의 글을 써서 하휴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때 하휴는 정현의 글을 읽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정강성이 나의 집에 들어와 나의 무기를 빼앗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鄭康成入吾室操吾戈以伐我乎)”라 했다.

97) \* 방미두점(防微杜漸): 어떤 재앙이나 사건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뜻이다. 「後漢書·丁鴻傳」: “若敕政責躬, 杜漸防萌, 則凶妖消滅, 害除福湊矣.”

98) \* 진역(畛域): 원래 畛이란 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이나 경계를 지칭한다. ‘진역’이란 두 가지 사물의 경계를 지칭한다. 「莊子·秋水」: “泛泛乎其若四方之無窮, 其無所畛域.”

【범례⑩ 역주】: 文章과 德行은 공자의 門徒로 부터 이미 科目으로 나누었다. 두 가지의 능력이란 한 둘만을 대표하지 않는다. 지금 「충목」에 수록한 龔詡와 楊繼盛의 文集, 周宗建<sup>99)</sup>·黃道周<sup>100)</sup>의 經解 등은 인물만을 언급하고 도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耿南仲<sup>101)</sup>의 「易」과 吳玠의 詩評은 도서만을 언급하고 인물은 논하지 않았다. 무릇 이런 부류는 간략히 變通을 보인 것이다. 한편으로 공을 알렸고, 다른 한편은 義을 취했다. 姚廣孝의 「逃虛子集」<sup>102)</sup>과 嚴嵩<sup>103)</sup>의 「鈐山堂詩」는 비록 문장의 美麗함은 족히 문단 사람과 견줄만했다. 그러나 요광효는 반역을 도와서 군사를 일으켰고,<sup>104)</sup> 엄숭은 권력에 집착해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 (이는) 名과 義의 준거로 보면 결코 작은 흠이 아니다. 「충목」은 무릇 이런 부류의 저술을 배척해야 하는 이유를 보였고, 목록만을 첨부해 聖朝의 彰善癉惡은 천추의 公論을 준거로 삼았음을 알리는데 사용했다.

• 원문⑩: 一, 文章德行, 自孔門既已分科. 兩擅厥長, 代不一二. 今所錄者, 如龔詡<sup>105)</sup>·楊繼盛<sup>106)</sup>之文集, 周宗建·黃道周之經解, 則論人而不論其書;

99) \* 주종건(周宗建): 주종건(1582-1627)의 字는 季侯이고 명말 天啓 연간의 東林黨의 일원으로 崇禎 초기에 ‘忠毅’로 추존되었다. 저술로는 「老子解」가 있지만 乾隆 44년(1779년)에 금서로 분류되었다.

100) \* 황도주(黃道周): 황도주(1585-1646)는 명말 시기의 학자, 화가, 서예가로 淸에 항거한 인물로 字는 幼玄이다. 天啓 2년에 進士로 임관한 후에 翰林院修撰 등을 역임했고, 淸에 항거하다 결국 포로가 되어 죽고 말았다.

101) \* 경남중(耿南仲): 경남중(?~1129)의 字는 希道이며 송나라 神宗 元平 5년(1082)에 進士로 임관했다. 이후에 徽宗과 欽宗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102) \* 「도허자집(逃虛子集)」: 명나라 姚廣孝의 저술로 「충목」에는 集部 ‘別集類存目’에 수록했다.

103) \* 엄숭(嚴嵩): 엄숭(1480-1567)의 字는 惟中이고 명나라 1505년 진사에 급제하고 詩文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內閣大學士을 역임했고, 정치권력을 잡은 후 뇌물을 받았다. 만년에는 황제의 신뢰를 잃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까지 몰수되어 빈곤 속에서 죽었다. 그의 저술로는 시문집인 「鈐山堂集」, 35권이 있고, 본서는 「충목」 集部 ‘別集類存目’에 편제되었다.

104) \* 요광효와 관련된 반란 사건은 「明史·姚廣孝傳」에 수록에 수록되었다.

105) \* 공후(龔詡): 공후(1381~1469)는 명대 학자로 字는 大章으로 부친이 무관인 成五開衛 등에 임관하면서 태조연간에 南京의 金川門의 수비를 담당했다. 이후 惠帝시기 燕王인 朱棣가 기의하자 궁성의 수비에 실패하고 장기간 은거하다가 복권되었다. 저술로는 「野

耿南仲之說『易』·吳玠之評詩，則論書而不論其人。凡茲之類，略示變通。一則表章之公，一則節取之義也。至於姚廣孝之『逃虛子集』·嚴嵩之『鈐山堂詩』，雖詞華之美足以方軌文壇，而廣孝則助逆興兵，嵩則怙權蠹國，繩以名義，非止微瑕。凡茲之流，並著其見斥之由，附存其目，用見聖朝彰善癉惡，悉准千秋之公論焉。

【범례⑰ 역주】 儒者の 저서는 종종 각기 하나의 義만을 분명히 했다. 혹은 상반되지만 서로 보완하여 적합했고, 혹은 서로 공격하나 실은 서로를 도왔다. 그래서 “말의 뜻이 어찌 한 가지뿐이겠는가. 상황에 따라서 각기 해당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sup>107)</sup>라고 말한 것이다. 옛 것의 고증에 별다른 체례가 있지 않고, 다양한 갈래가 있어 비교적 복잡하다.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과 고집과 지나친 편견은 허리 좌우에 검을 차나 늘 적합하지 않은 것과 같다. 지금 『총목』이) 채록한 저록은 經과는 떨어져 이치가 절반뿐이거나, 시비가 전도된 것은 반드시 엄격히 배척했다. 남을 속이려는 사사로운 뜻과 보고 듣는 바를 熒惑<sup>108)</sup>시킨 저술은 최선을 다해 반드시 배척했다. 학술을 밝히는 것은 그 장점을 취해 문장을 품평하고, 하나의 격식에 구속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함께 수용함이 渤海<sup>109)</sup>가 여러 물줄기를 수용하는 듯 했으니 어찌 『全書』라는 제목에 어긋남이 있겠는가?

- 원문⑰: 一，儒者著書，往往各明一義。或相反而適相成，或相攻而實相救，所謂言豈一端，各有當也。考古者無所別裁，則多岐而太雜；有所專主，又膠執而過偏，左右佩劍，均未協中。今所採錄，惟離經畔道·顛倒是非者，掎擊必嚴；懷詐挾私·熒惑視聽者，屏斥必力。至於闡明學術，各攝所長，品鑑<sup>110)</sup>

古集」 3권이 있고, 본서는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106) \* 양계성(楊繼盛): 양계성(1516-1555)은 명나라의 저명한 충신으로 字는 仲芳으로 嘉靖 28년에 進士로 임관했다. 일찍이 嚴嵩을 탄핵하기도 했고, 저술로는 『楊忠愍文集』 등이 있다.

107) \* 『禮記·祭義』: “夫言豈一端而已。夫各有所當也。”

108) \* 형혹(熒惑): 원래 ‘火星’을 의미했는데, 고대시기 화성은 災禍나 兵亂, 사망 등의 징조를 보여 주는 별이라 여겼다. 후에 이런 의미가 변해 ‘어수선하고 의혹이 있다’, ‘현혹, 미혹’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109) \* 발해(渤海): ‘渤海’를 지칭하며, 산둥 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 위치한다. 황하를 비롯한 여러 개의 강줄기는 발해에서 만나 바다로 유입한다. 본문에서는 『총목』의 ‘兼收並蓄’이 渤海가 많은 강줄기를 포용하듯이 했다는 뜻이다.

文章, 不名一格, 兼收並蓄, 如渤澥之納衆流, 庶不乖於『全書』之目.

【범례⑱ 역주】『七略』이 기록한 古書의 다수는 다른 서목을 근거했고, (이는) 班固의 『한서·예문지』의 주석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시대가 흘러 明代에 이르러, 僞書들이 더욱 증가해서 도서의 眞僞가 뒤섞여 고증이 힘들었다. 지금 (『총목』은) 하나하나 관련 도서를 상세하게 조사해 물리쳐야 할 도서는 서목만을 보존했고, 아울러 오류도 辨證했다. 원래 위서에 속했던 도서는 流傳 시기도 오래이다. 간혹 殘本의 도서를 수집해서 진위를 증명하기도 했지만, 역대의 詞人은 이미 僞書 내용을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이를 버리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서목을 남겨서 판별했다. 대략 原書가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 저술했다’라고 적었다. 위작이 분명하면 ‘舊本’이라 쓰고,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의 저술했다’라 적었다. 오류가 계속되거나 잘못이 전승된 경우가 있는데, 呂本 가운데 『春秋傳』의 舊本을 呂祖謙의 것으로 칭한 부류로, 그 (기록하는) 형식은 역시 동일하다. 역대의 역대 서목에 기록된 도서지만 실제로 취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燕丹子』<sup>111)</sup>와 陶潛의 『聖賢群輔錄』이 그런 부류인데, 황상께서 망령됨을 통찰하시고 귀감으로 삼아 이를 배척하고, 서목을 남긴 것은 濫登을 막고자 함이다.

- 원문⑱: 一, 『七略』所著古書, 卽多依託. 班固『漢書·藝文志』注可覆按也. 遷流泊于明季, 僞妄彌增, 魚目混珠,<sup>112)</sup> 猝難究詰. 今一一詳核, 並斥而存目, 兼辨證其非. 其有本屬僞書, 流傳已久; 或掇拾殘剩, 眞贗相參, 歷代詞人已引爲故實, 未可概爲捐棄, 則姑錄存而辨別之. 大抵灼爲原帙者, 則題曰某代某人撰; 灼爲贗造者, 則題曰舊本, 題某代某人撰; 其踵誤傳訛, 如呂本中『春秋傳』舊本稱呂祖謙之類, 其例亦同. 至於其書雖歷代著錄而實一無可取, 如『燕丹子』·陶潛『聖賢群輔錄』之類, 經聖鑒洞燭其妄者, 則亦斥而存目, 不使濫登.

110) \* 품즐(品臞): 품평하여 정하다는 뜻이다. 『尙書·洪範』: “惟天陰鷲下民, 相協厥居”라고 했다.

111) \* 『연단자(燕丹子)』: 저자가 불명한 저술로, 『총목』에서는 子부의 ‘小說家類存目’에 수록했다.

112) \* 어목혼주(魚目混珠):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이다’라는 뜻으로,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인 것을 비유한다. (漢) 魏伯陽, 『參同契』 卷上: “魚目豈爲珠? 蓬蒿不成檟.”

【범례⑱ 역주】 九流<sup>113)</sup>는 「七略」에서부터 이미 기록되었다. 하지만 方技家は 시대가 지나며 탈바꿈했고, 篇帙이 날로 증가했고, 내용이 종종 僞妄되거나 황당하여 탐구할 가치가 없게 되었다. 혹은 그 가치가 일천하고 미미해서 수록할 필요성도 작아졌다. 지금 (「총목」은) 「四庫」에 수록되어 다소 오래되어 비교적 합당한 저술만을 선택했고, 각기 몇 종의 서목만 기재해서 그 대강만 알도록 했다. 미비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수집해서 구하지 않았다. 聖朝의 遺文을 編錄해 聖學을 설명하고 王道를 밝히고자 함을 위주로 삼아서 百家들의 雜學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했다.

• 원문⑱: 一, 九流自「七略」以來, 卽已著錄. 然方技家遞相增益, 篇帙日繁, 往往僞妄荒唐, 不可究詰. 抑或卑瑣微末, 不足編摩. 今但就四庫所儲, 擇其稍古而近理者各存數種, 以見彼法之梗概. 其所未備, 不復搜求. 蓋聖朝編錄遺文, 以闡聖學·明王道者爲主, 不以百氏雜學爲重也.

【범례⑳ 역주】 (「총목」에) 수록된 도서는 異同을 고증해서 그 득실을 분명히 판별함을 위주로 했다. 그래서 辯論과 反駁의 문장이 많다. 하지만 衆說이 서로 다른 것은 (차이를) 헤아려 취사해 선별했고, 세간에 알려지지 않아 조명을 받지 못한 저술은 널리 알렸다. 司馬遷과 班固의 역사서와 李白과 杜甫의 詩, 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의 문장과 周敦頤·程頤와 程顥 형제·張載·朱熹 등 道學의 定論은 오래 전부터 믿은 것이라 쓸데없이 중복해 언급하지 않았다. 刊刻과 傳寫의 異同, 編次의 증설과 삭제의 始末을 논하고 해당 도서의 판본이 좋고 나쁨만을 기록했다.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저술의 설명은 舊文의 인습에 구속되지 않았다. 더 이상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저술은 망령되게 다른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무릇 마땅히 귀결해야 할 지당함에 힘써서 (도서) 취사에 공정을 밝혔다.

113) \* 구류(九流): 班固의 저서인 「한서·예문지」에서 분류한 제가백가의 분류 기준으로 儒家·道家·陰陽家·法家·名家·墨家·縱橫家·雜家·農家 등 9개의 학파를 지칭한다. 이곳에 小說家를 더하여 10가라고도 부른다. '구류'란 실제로 선진시기 諸子의 별칭이나 본문에서는 劉歆의 「칠략」에 수록된 저록을 지칭한다.

- 원문②: 是書主于考訂異同, 別白得失, 故辨駁之文爲多. 然大抵於衆說互殊者權其去取, 幽光未耀者加以表章. 至於馬·班之史, 李·杜之詩, 韓·柳·歐·蘇之文章, 濂·洛·關·閩<sup>114</sup>之道學, 定論久孚, 無庸更贅一語者, 則但論其刊刻傳寫之異同, 編次增刪之始末, 著是本之善否而已. 蓋不可不辨者, 不敢因襲舊文; 無可覆議者, 亦不敢橫生別解. 凡以求歸至當, 以昭去取之公.

#### 4. 「총목」, 「凡例二十則」의 구성과 서지통정<sup>115</sup>)

「凡例二十則」은 「총목」 서두에 위치해 「총목」의 전체 체계를 설명하는 일종의 ‘일러두기’에 해당한다. 원래 「총목」은 「四庫全書」의 자매품으로 독자에게 8만여 권의 저록과 9만권의 未수록된 도서에 대한 통일적인 ‘解題’와 ‘索引’ 등의 편리 제공을 위해 편찬되었다. 그래서 「凡例二十則」을 근거로 다양한 도서의 수록과 분류, 비평과 평가 등을 통일적, 통합적으로 파악해 객관적인 도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했다. 다시 말해 「凡例二十則」은 淸나라 시기 중국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된 ‘서지통정’의 기본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범례’라는 ‘서지통정’

114) \* 엄(濂)·락(洛)·관(關)·민(閩): 송대 성리학의 중요한 4가지 학파를 지칭한다. ‘濂’이란 周敦頤를 지칭하는데 이는 그가 道州營道의 濂溪에 거주 때문에 세칭 ‘濂溪’선생이라 했다. 그는 송대 성리학을 개창한 선구자로 程頤와 程顥의 스승이었다. ‘洛’이란 정이와 정호 형제를 지칭하는데, 이들은 원래 洛陽에 살았기 때문에 세칭 이들의 학문을 ‘洛學’이라 했다. ‘關’이란 張載로 그는 關中에 거주했기 때문에 ‘橫渠’선생이라고 했고, 장재의 학문을 ‘關學’이라 했다. ‘閩’이란 朱熹를 지칭하는데, 그는 일찍이 福建의 考亭에서 강학을 했기 때문에 ‘閩學’이라 호칭하거나, 혹은 ‘考亭派’라고도 불렀다.

115)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이란 원래는 16세기 서방 서지학의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는 지역과 국가를 초월해 여러 형태의 문헌과 정보, 및 자료들을 구비해 모든 학문분야의 문헌탐색을 가능케 하기 위해 시도된 일련의 문헌정보의 통일화·통합화 과정을 지칭한다. 淸나라 초기의 당시 중국의 지역 규모와 도서의 수량, 「四庫全書」 편찬에 참여한 인원과 시간 등을 종합해보면 ‘서지통정’의 개념을 18세기 초기 중국에도 충분히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四庫全書」의 편찬과 필사를 통해 중국 전역에 분산 배치한 점은 국경이나 지역적 경계선을 초월해 인간의 지식을 되도록 共用共有하고 진과 하려는 ‘서지통정’의 원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본다면 「총목」의 ‘범례’는 ‘서지통정’을 실현하는 일종의 구체적인 매뉴얼에 해당한다. ‘범례’는 즉히 ‘서지통정’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 ‘서지통정’에 관한 내용은 李姬載, 「書誌學新論」, (韓國圖書館協會, 1998) 162-179쪽을 참고.

의 방안을 통해 시기적, 지역적, 종류별로 다양한 도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1 「凡例二十則」의 구성과 분석

‘범례’는 「총목」과 「四庫全書」의 전체적인 체계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총목」의 저술원칙, 도서의 수록기준, 著錄과 存目, 유목의 배열, 자목의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서지통정’이 청사진이다. 이 청사진은 대략 13가지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凡例二十則”의 역주를 근거로 각 ‘범례’의 구성을 항목별로 분석해 분류된 내용을 나열, 중복을 피해 엄격한 취사선택해 얻은 것이다. 13가지 분류항목의 선별을 위해서 가능한 전대의 목록서나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지 않으려 했고, 또한 가능한 「총목」이 갖는 다양한 서지학적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13가지 항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총목」 「凡例二十則」의 구성과 분류

/	분류항목	‘범례’의 주요 근거와 핵심 논점	比定
1	저술원칙	①欽定과 御覽	저술사상
2	저술사상	⑨⑩勸善懲惡, 彰善癉惡 ⑬敦崇風教 ⑮公道大彰 ⑯表公取義 ⑰闡聖學, 明王道	
3	도서선별	⑦善本과 足本 ③著錄等差	도서변위
4	도서분류	②經·史·子·集 ⑦③著錄과 存目	
5	유목분류	②部-類-子目	유례논증
6	유목배열	④嚴選과 隸屬	
7	자목엄선	⑤條理秩然, ⑥分析子目, 條理分明	
8	저록편제	②帝王著作, 冠各代首, ⑧時代爲次	도서해제
9	저록체례	⑨序文과 提要 ⑩總序와 ‘案語’ ⑪爵里的 기술 ⑱舊本과 僞書	
10	저록원칙	⑫⑮考證精核, 論辯明確 ⑳考訂異同, 別白得失	
11	학술유파	⑰兼收並蓄 ⑮봉당과 학파의 배제 ⑲尊經과 雜學	학술기원
12	학술경향	⑫敦茲實學 ⑬釋道外教, 詞曲末技 ⑭實事求是, 務求有用	
13	외국저술	⑦王化外臣, 不分疆界	

분류 항목을 구성하는 ‘저술원칙’에서 ‘외국저술’까지의 13가지 ‘분류 항목’은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범례의 주요 준거와 핵심 논점’을 구성한다. 여기에 표시된 아라비아 숫자들은 앞서 기술한 [범례역주]의 숫자와 일치한다. <도표>의 내용을 보면 「凡例二十則」은 각 항목마다 다양한 준거와 핵심 내용이 다중으로 중첩되어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3가지 ‘분류 항목’과 그 내용을 종합해서 ‘比定’하면 ‘범례’의 언급 범주는 대략 크게 5가지의 나누어진다. 즉 ‘著述思想’·‘圖書辨僞’·‘類例論證’·‘圖書解題’·‘學術起源’ 등이 그것이고, 이런 5가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범례’의 내용과 특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4.2 「총목」의 저술 원칙과 도서 선별 및 분류 - ‘도서변위’

「총목」 저술의 원칙은 欽定과 御覽에 의한 관찬서로 8년간의 저술시간 모두 21차례의 聖諭<sup>116)</sup>를 통해 乾隆帝는 「총목」 저술에 직접 관여했고, 「聖諭」 1권을 본서 문두에 배치했다. 국가 권력을 애용해 전국에 산재된 도서를 수집함은 물론 欽定과 御覽을 통한 「총목」의 편찬은 「총목」 자체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淸나라 초기 당대 최고의 학자인 戴震·翁方綱·姚鼐 등은 四庫館<sup>117)</sup>의 직분으로 수집된 도서를 분석, 고증했고, 이를 통해 저록의 등차와 善本과 足本の 엄선 및 ‘舊本’과 ‘存目’을 결정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도서의 선별과 분류는 “考證精核, 論辯明確”이란 당시 청나라 초기의 학문적 성과 및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 4.3 類目 및 子目的 배열과 - ‘유례논증’

「총목」의 四部는 「수서·경적지」 이래 목록학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역대

116) 21차례의 聖諭는 乾隆 37년(1772)에서 시작하여 乾隆 46년(1781년)까지 지속되었다.

117) 四庫館은 「총목」의 체계적인 편찬을 위해 總裁官·副總裁官·總纂官·提調官·協勘總目官·纂修官·天文算法纂修官·收掌官·總閱官·總校兼提調官·復校官·分校官·考證官·督催官 등의 직관을 두고, 분업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 「총목」을 편찬했다. 「총목」 저술에 참여한 사고관은 「欽定四庫全書勘閱繕校諸臣職名」에 수록하여 ‘범례’ 앞에 배치했다.

등장했던 類目の 장·단점을 분석해 44개로 확정했다. 또한 ‘類目’ 아래 ‘子目’을 설치해 도서와 학술분류 체계를 더욱 분명히 했다. ‘詩集’과 ‘文集’을 통합해 ‘別集’을 신설한다거나 地理類의 자목을 10개로 엄선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총목」은 類目の 확정과 배열을 통해 학술의 ‘源流政變’과 ‘兼收並蓄’을 분명히 하며 ‘通變’의 근거를 밝혔다. 이는 “도서의 분류가 분명하면 학술도 자명해 진다”<sup>118)</sup>라는 전대의 목록학적 전통을 계승해 발전시킨 결과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술의 기원 고찰하고 학술의 유과를 분별한다.”<sup>119)</sup>라는 목적을 지향했다.

#### 4.4 「총목」의 해제 구성과 특징 - ‘도서해제’

서구의 서지학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대략 ‘原書書誌學’<sup>120)</sup> ‘體系書誌學’<sup>121)</sup> ‘形態書誌學’<sup>122)</sup> 등 3가지 나눌 수 있다.<sup>123)</sup> 그 중에 ‘체계서지학’은 중국의 ‘목록학’에 해당하고, 특히 상세하고 정확한 解題의 기술은 중국목록학의 주된 특징으로 지적된다. 원래 解題라는 것은 특정한 도서의 내용, 저자의 생애, 저술의 편찬 의도와 핵심, 저술의 流傳 과정, 篇卷의 分合, 眞僞의 식별 및 해당 도서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일명 ‘提要’라고 부른다. 「총목」의 ‘범례’는 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상세한 考證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총목」의 해제는 역대 목록서의 장점과 考據學이 결합하여 <도표>의

118) 鄭樵, 「通志·校讐略」: “類例旣分, 學術自明.”

119) 章學誠, 「校讐略」: “辨章學術, 考鏡源流.”

120) ‘원문서지학(textual bibliography)’은 연구방법이 분석과 비평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분석서지학(analytical bibliography), 혹은·비평서지학(critical bibliography)라고 부르며 중국의 校勘學, 혹은 校讐學에 해당한다.

121) ‘체계서지학(systematic bibliography)’은 열거서지학(enumerative bibliography), 혹은 주제서지학(subject bibliography), 지적서지학(intellectual bibliography)이라 부르며 중국의 目錄學에 해당한다.

122) 형태서지학(physical bibliography)은 일명 material bibliography라고 하며 중국의 版本學에 해당한다.

123) 이러한 분류는 千惠鳳 교수의 논점을 근거했고(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1993), 연구자에 따라서 체계서지학을 ‘總觀書誌學’으로 호칭하기도 한다(안춘근, 「韓國書誌學原論」, 범우사, 1990).

“7. 저록편재 · 8. 저록체례 · 9. 저록원칙”의 형태로 출현했다. 그리고 ‘總序’를 설치해 학술의 源流와 正變을 기술했고, 序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案語’를 두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총목」의 문헌해제의 출현은 당시 청초의 考據學과 乾嘉學派로 대표되는 학문적인 경향과 성취와 일정하게 관련이 된다는 점이다.

#### 4.5 「총목」의 학풍과 尊經사상 - ‘학술기원’

「총목」의 ‘범례’의 학술적 풍토는 시종일관 공리공담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는 實事求是를 강조했다. 이런 학술적인 변화에 중심에 乾嘉學派<sup>124)</sup>가 있었다. 경학연구는 이들의 주된 학문의 대상이고 목록학의 연구 역시 경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건국학과의 학자들이 함께 「通鑑輯覽」·「續通志」·「續文獻通考」·「清通典」·「大清一統志」·「古今圖書集成」·「四庫全書」와 「총목」 등의 편찬에 참여했고,<sup>125)</sup> 그 과정에서 舊本과 僞書의 파악과 정확한 義理와 褒貶을 위한 수준 높은 실학적, 考據學<sup>126)</sup>적인 학문 소양의 발휘 될 수 있었다.<sup>127)</sup>

124) 청나라 乾隆(1735-1796)과 嘉慶(1796-1820)연간 및 그 이전에 출현한 일련의 학자들을 지칭한다. 건국학과의 시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 대략 청초의 黃宗羲·顧炎武·方以智·閻若據·胡渭·毛奇齡 등의 유가 경전의 연구에서 찾는다. 특히 고염무를 청초 考據學의 선구자였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乾嘉 시기 고거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惠棟의 ‘吳派’와 戴震의 皖派의 영향이 컸다. ‘吳派’는 漢代 유학자의 경전을 수집해 연구하는 것 주력하며, 漢代의 학설과 경전을 추앙했고, 名物의 訓詁에 문물제도의 고증에 주력하며 漢學을 해석하는데 주력했다. 江聲·江藩·王鳴盛을 중심으로 三禮 연구에 주력하면서 명물과 제도를 고증 것이 역시 오판의 특징이다. 이들은 특히 音韻, 文字學 등의 어문학을 통해 경전을 이해했다. 皖派의 대진은 이후 段玉裁·王念孫·王引之의 부자 등의 저명한 학자들을 출현했다.

125) 이보다 앞서 康熙帝 시기에는 일련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明史」·「康熙字典」·「淵鑑類函」·「佩文韻府」 등의 대형 관찬서를 저술했다.

126) 건국시기의 학술적 변화를 켄트 가이는 ‘문헌주의 운동’이라 하며 漢學, 樸學, 考證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乾嘉 시기에 朱筠 등의 일련의 학자는 수백 명의 문인들을 사제관계를 토대로 學團을 형성했다고 했다(켄트가이 저, 양희용 역, 「사고전서」(생각과 나무, 2009), 85-86, 98-100).

127) 건국학과의 학술 정신은 널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귀납해 연구하는 방법을

「총목」 ‘범례’의 “考證精核，論辯正確”， 혹은 “考訂異同，別白得失”， “敦茲實學” 등은 실용과 현재적 가치를 중시한 考據學의 학술적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총목」은 ‘범례’는 역대의 목록학의 전통을 계승해 ‘經學’을 추존하며 기타 학문과 차별화 했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불교와 도교의 저술을 배제하기 못하고 「총목」 중 이들 서목을 子部에 배열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사회적 영향력의 반영일 뿐, 經學 중심의 유교전통에 도전할 수준을 결코 아니었다. 종교서적의 수록은 분명히 관찬목록이 갖는 교화기능의 강조라는 정치적 목적이 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兼收並蓄”이란 원칙과는 학술적인 관점과는 모순되지만 그럼에도 교화 기능의 강조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유가와 경학의 지위는 공고해 졌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붕당과 학파의 배제’라는 관점 역시 “人心世俗之害”<sup>128)</sup> 라는 정치목적에 한해서만 영향력이 있다는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

#### 4.6 清朝의 문화정치와 그 한계 - ‘저술사상’

「총목」의 저술 사상에 대해 ‘범례’는 ‘勸善懲惡’, ‘彰善癉惡’, ‘敦教風教’, ‘公道大彰’, ‘闡聖學，明王道’ 등의 가치 실현을 강조했다. 학술의 공공성과 효율성, 도덕성, 혹은 백성들의 교화와 정권의 정당성 강화라는 점에서 어쩌면 관찬서 갖는 기본 성격이면서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사찬목록에서 보기 힘든 권위와 공신력, 객관성을 갖는다는 점은 관찬서목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그것이 ‘聖諭’와 ‘御覽’의 특정시대의 정치적 가치를 전제한 ‘公道’와 ‘王道’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도표>의 “3. 도서선별, 4. 도서 분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총목」에 수록된 著錄와 存目은 황권과 정권의 강화라는 정치이념을 내재하고 있다. 결국 ‘公道’, ‘勸善懲惡’, ‘王道’란 자유로운 학술적 의미 보다는 학술이

---

사용해, 實事求是와 經世致用的 목적에 이르고자 했다. 이들은 고대 경학가의 고거와 훈고의 치학 방법을 근거로 ‘經學’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엄격한 학문태도를 견지했다. 그리하여 문자학, 훈고학의 연구법을 史書의 분석, 고적의 校勘, 輯佚, 辨僞에 적용해 금석, 지리, 친문, 역법, 수학, 문물제도 등을 연구했다. 이상과 같은 건가학파에 대해서는 陳祖武, 「乾嘉學派研究」(河北人民出版社, 2007)를 참조.

128) 「범례」<sup>15)</sup> 역주와 「원문」<sup>15)</sup>의 내용을 참고할 것.

정치적 요구에 附庸하는 어용적 성격도 내재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중국에서는 『四庫全書』와 『총목』의 저술을 통해 ‘서지통정’을 시도했고, 이런 일련의 국가사업으로 전개된 전국적 규모의 도서정리의 통일적, 통합적인 시도는 『총목』의 『凡例二十則』에 의해서 지휘되며 완성되었다. <도표>에서 분석한 13가지 분류항목과 5가지 분류범주는 바로 ‘서지통정’을 성공시켰던 가장 중요한 준거로 작용했다.

## 5. 『총목』, 『案語』의 유형과 사례 분석

중국 목록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어’이다.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록학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余嘉錫은 ①篇目, ②敍錄, ③小序, ④版本序跋 등으로 보았고,<sup>129)</sup> 姚名達은 ①篇目, ②解題, ③索引, ④小序, ⑤總敍 등으로 파악했고,<sup>130)</sup> 來新夏는 ①書名, ②小序, ③解題 등으로 보았고,<sup>131)</sup> 周少川은 ①名目, ②序, ③解題, ④附注 라고 했다.<sup>132)</sup> 그 중에 周少川이 주장한 ‘附注’는 사실상 ‘안어’의 기능을 염두에 둔 지적 같다. 원래 ‘안어’란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非항시적이나 非고정적인 성격이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해 목록학의 주된 구성 요소로 인식되지 않은 듯하다.

역대 목록서의 분류체계가 점차 일정한 범주로 정착되면서 ‘안어’의 기능은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총목』의 경우 四部로 분류체계가 집대성되면서 部目-類目-子目-圖書의 체계적인 체계가 정착했다. 『총목』의 ‘안어’ 사용 수량을 간단히 파악해 보면 전체 44개의 類目 중 11곳의 類目에서 21개 항목의 ‘안어’가 있고, 전체 66개의 子目中에 42곳의 子目에서 42개 항목의 ‘안어’가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도서해제를 위한 다수의 ‘안어’들이 『총목』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129) 余嘉錫, 『目錄學發微』(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30-84.

130) 姚名達, 『中國目錄學史』(上海古籍出版社, 2002), 134.

131) 來新夏, 『古典目錄學淺說』(中華書局, 2003), 46.

132) 周少川, 『中國目錄學』(中州古籍出版社, 1996), 14-25.

「총목」에서 ‘안어’는 ‘범례’에서 언급되고 있는 <도표>의 13가지 분류항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체례를 종합으로 연결하면서 미진한 곳을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범례’의 제10칙에 의하면 總敍·類目·小序·子目이나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진한 곳의 해석이나 通變의 이유는 案語를 통해 설명한다고 분명히 언급했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안어’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도표>에서 ‘比定’한 ‘저술사상’, ‘도서변위’, ‘유례논증’, ‘도서해제’, ‘학술기원’ 등의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는데, 특히 「총목」에 언급된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며 다음과 같다.

## 5.1 유례논증 - ‘凡例’의 보완과 ‘部序’의 기능

‘안어’는 사부의 분류 체계와 관련해 ‘범례’와 함께 ‘部序’의 기능을 ‘안어’를 사용해 구현했다. 「총목·經部·子夏易傳·案」:

“唐나라 徐堅은 「初學記」에서 太宗의 御題를 역대 제왕 앞에 배열함은 신하가 군주를 받드는 대의이다. 焦贛의 「國史經籍志」와 朱彝尊의 「經義考」도 모두 이전의 체례를 따랐다. 신(臣)은 「사고전서」를 편찬하면서 처음에는 「易經通注」·「纂周易折中」·「御纂周易述義」 등을 저록함에 모두 ‘經’의 맨 앞에 두었다. 그러나 (황상)의 지시를 받고서 (경전이 아닌) 국조에 저술된 서목의 맨 앞에 두라고 명하여 尊卑의 순서와 시대가 뒤섞이지 않도록 했다. 이런 황상의 이치는 중도를 겸하시며, 기준을 세우시니 실로 매우 공경하셨다. 삼가 훈시를 준수하여 「子夏易傳」을 맨 앞에 두고, 여기에 (「사고전서」 편찬의) 대의를 밝혀 「사고전서」의 통례를 밝히고자 한다.<sup>133)</sup>

「子夏易傳」에 대한 解題와 함께 청조에서 御制로 편찬한 도서를 맨 앞에 배열한다는 원칙인 ‘범례’ 제2칙을 근거로 문두에 배치한 연고를 ‘안어’의 형식으로 설명했

133) “謹案：唐徐堅「初學記」乙太宗御制升列歷代之前，蓋臣子尊君之大義。焦贛「國史經籍志」、朱彝尊「經義考」並踵前規。臣等編摩「四庫」，初亦恭錄御定「易經通注」、御纂周易折中、御纂周易述義，弁冕諸經。仰蒙指示，命移冠國朝著述之首，俾尊卑有序而時代不淆。聖度謙沖，酌中立憲，實爲千古之大公。謹恪遵彝訓，仍托始于「子夏易傳」，併發凡於此，著「四庫」之通例焉。”

다. ‘안어’는 ‘범례’ 외에도 ‘部序’를 보완하는 기능도 하였다. 『총목·別史·天潢玉牒·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본서는 明代의 世系를 기술한 것으로 마땅히 譜牒에 배열했다. 그러나 보첩의 傳本은 (내용이) 공허하여 독립된 門目을 만들 수 없었고, 때문에 ‘別史類’에 첨부했다. 이것과 本紀, 世表 등은 서로 (호환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sup>134)</sup>

譜牒을 독립된 문목으로 만들지 않고 서목을 엄선해서 ‘別史類’에 분류했던 특수한 상황을 설명했다. 즉 ‘안어’는 ‘部序’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이 외에도 ‘안어’는 ‘存目’을 설명하는 ‘小序’ 역할을 담당했다. 『총목』의 ‘部-類-子’라는 분류 체계는 동시에 ‘總敍’와 ‘小序’를 보유하나 ‘存目’의 경우는 ‘안어’가 ‘序’의 역할을 대신했다.

## 5.2 도서변위 - 위서

‘안어’는 총목에 수록된 도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였다. 앞서 인용한 『經部·子夏易傳』의 ‘안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타인의 이름에 기탁하여 지은 책은 僞造한 사람을 아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하나하나 책을 정확한 시대에 따라 배열할 수 없다. 그래서 『한서·예문지』는 기탁한 인물도 시대를 따라서 책을 배열했다. 지금도 이리 체례를 따라서 책을 배열했다.”<sup>135)</sup>

『총목』에 수록할 도서를 선별할 때 반드시 僞書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위서의 수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대의 서목 등을 참고해서 분류체례와 시대 순서로 반드시 도서의 진위판단을 강조했다.

134) 『總目·別史·天潢玉牒』: 案此書述明代世系, 於例當入『譜牒』. 然譜牒傳本寥寥, 不能自爲門目, 故附著『別史類』中. 蓋其文與本紀·世表相出入也.

135) 『總目·經部·子夏易傳·案』: “託名之書有知其贗作之人者, 有不知其贗作之人者, 不能一一歸其時代, 故『漢書·藝文志』仍從其所托之時代爲次. 今亦悉從其例.”

### 5.3 학술기원 - 학술의 전승과 治學 및 연구 경향의 소개

‘안어’를 통해 특정한 子目的 학술적인 전승과 변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經部·春秋類』의 ‘안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春秋』의 三傳은 서로 장·단점이 있고, 세상은 范寧의 논의를 믿을 만하다 하나, 그는 『춘추』의 근본을 확실히 연구하지 못했다. 『左傳』을 설명하며 ‘君子曰’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는 잘못은 작은 것이다. 『公羊』과 『穀梁』의 日月과 관련해 체례로 삼고, 별명으로 褒貶을 삼으니 천착을 하나 뜻이 통하기 힘들었다. 세 사람 모두 (학술은) 성인의 문헌에서 나왔는데 어찌 견해는 그렇게 다른 것인가? 左丘明은 친히 國史를 보면서 선인의 사적을 함께 남겼다. 사실에 근거해 말하면 그의 식견에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크게 오류가 생기지는 않는다. 반면에 『公羊』과 『穀梁』은 전후 사건을 중복해서 내용을 첨부했고, 자구를 미루어 추론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심정에 기대어 판단해 편벽된 의견을 따랐다. 그런데 사실을 고증자의 경우 과실은 적지만 허황된 내용을 논하는 자는 과실이 보다 크다. 후대 많은 학자들의 시비도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옳다. 『左傳』의 문장은 표현이 풍부하고 화려하다하여 후대가지 영향을 계속 주었다. 章沖의 『左傳』은 (사건)始末을 종합했고, 徐晉卿은 『左傳』의 對偶만을 배열하자, 후대인이 뒤를 이어 날로 저술이 많아졌다. 하지만 거의 經義의 뜻과 무관하게 되어 (저술) 내용이 반드시 귀한 것만은 아니었다.”<sup>136)</sup>

『春秋』의 三傳이라 불리는 『左傳』·『公羊傳』·『公羊傳』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문헌에 근거한 실학적인 治學의 중요성과 함께 학술적인 전승관계와 후대 연구자의 연구 경향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經部·樂類』의 ‘안어’에서는 天文과 樂律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樂理와 樂의 근본은 人和에 있고, 人和의 근간은 ‘君德’에 있음을 강조했다.<sup>137)</sup>

136) 『總目·經部·春秋類·案』: “案『春秋』三『傳』, 互有短長, 世以范寧所論爲允, 寧實未究其所以然也. 『左氏』說『經』所謂『君子曰』者, 往往不甚得『經』意. 然其失也, 不過膚淺而已. 『公羊』·『穀梁』二家, 鉤棘月日以爲例, 辨別名字以爲褒貶, 乃或至穿鑿而難通. 三家皆源出聖門, 何其所見之異哉? 左氏親見國史, 古人之始末具存, 故據事而言, 卽其識有不逮者, 亦不至大有所出入. 『公羊』·『穀梁』則前後經師, 遞相附益, 推尋於字句之間, 故憑心而斷, 各徇其意見之所偏也. 然則征實跡者其失小, 騁虛論者其失大矣. 後來諸家之是非, 均持此斷之可也. 至於左氏文章, 號爲富豔, 殘膏剩馥, 沾溉無窮. 章沖聯合其始終, 徐晉卿排比其對偶, 後人接踵, 編纂日多, 而概乎無預於『經』義, 則又非所貴焉.”

### 5.4 도서해제 - 도서제요와 학술평가

‘안어’는 「총목」에 수록한 저술에 대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해당 도서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평하여 언급했다. 「子部·雜家類存目」에서 「經子臆解」<sup>138)</sup>의 소개하며 ‘안어’는 본서를 다음과 같이 ‘해제’하며 평가했다.

“陸德明的「經典釋文」은「老子」와「莊子」를 수록했는데 고래의 저록을 經解에 배열해서 音訓을 考訂하고 始末을 검비했다. 漢나라 이래 諸儒의 舊學과 서적으로 전승되어 두 가지는 경해에 수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논하지 않기로 한다. 王世懋의 저술도 비록 「周易」·「四書」를 해석했지만 몇 가지를 억측한 필기 수준에 불과해 經義라고 하기에는 부족했고, 게다가 道家의 말을 참조하기도 했다. 이는 원래 육덕명의 잘못이나 결국 성과가 없으니 「경전석문」과 함께 논할 수 없다. 그리하여 지금 雜家類에 배열함이 사실에 따르는 것이다.”<sup>139)</sup>

「經子臆解」는 「經典釋文」과 유사한 서명과 체례를 표방했지만 經解의 수준과 수량에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서 子部의 雜家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子部·小說家類·雜家」에서 「南唐近事」의 ‘안어’에서 이 책은 과거 南唐의 史書로 파악되어 ‘載記類’에 수록되기도 했지만 실은 서명만 ‘南唐’일 뿐 내용은 무관한 것이라 ‘小說家’의 ‘雜史’에 수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제했다.<sup>140)</sup>

137) 「總目·經部·樂類·案」: “天文·樂律, 皆積數之學也. 天文漸推漸密, 前不及後. 樂律則愈久愈失, 後終不得及前. 蓋天文有象可測, 樂律無器可憑也. (中略)夫樂生於人心之和而根於君德之盛, 此樂理·樂本也. (中略)今所採錄, 多以發明律呂者爲主, 蓋製作之精, 以征諸實用爲貴焉耳.”

138) 「總目·子部·雜家類存目」: “明王世懋撰. 世懋有「卻金傳」, 已著錄. 是編凡解「易」二條, 解「論語」二條, 解「孟子」三條, 解「老子」一條. 大抵自以己意推衍, 無所考證發明, 不脫明人語錄之習.”

139) 「總目·子部·雜家類存目·案」: 陸德明「經典釋文」兼及「老子」·「莊子」而古來著錄皆入 經解, 以其考訂音訓, 始末兼該, 漢以來諸儒舊學, 藉是以傳. 二子附錄其中, 存而不論可也. 世懋是編, 雖亦解「周易」·「四書」, 然不過偶拈數則, 特筆記之流, 不足以言經義. 又參以道家之言, 是有德明之過而無其功, 不能與之並論矣. 今入之「雜家類」中, 從其實也.

140) 「總目·子部·小說家·雜事·案」: “偏霸事蹟, 例入載記. 惟此書雖標南唐之名, 而非其國記, 故入之小說家. 蓋以書之體例爲斷, 不以書名爲斷, 猶「開元天寶遺事」, 不可以入

## 5.5 저술사상 - 經學과 儒敎의 중시

‘안어’를 통해 「총목」에 내재한 경학 중심의 저술 사상을 經書의 개작과 僞書의 등장을 강력히 배격했다. 이와 동시에 이런 저급한 저술을 存目的 형태로 보존해 귀감으로 삼기도 했다. 「經部·尙書」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薛季宣은 古經을 僞作했고, 王柏·賀成大·胡一中 등은 「經」을 개작하니 이런 저술을 선별해 가려내야 한다. 그럼에도 서목을 보존한 것은 한편으로 기이함을 좋아하는 조짐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古經(古經)을 개작해 혼란을 초래하는 조짐을 예방하기 위함이다.”<sup>141)</sup>

「經部·尙書大傳及補遺」의 ‘안어’에서 이 책은 일반적인 ‘經解’를 위한 저술이 아니고 經文과는 거리가 있는 산실된 내용을 수집해 만든 것이라 참고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 했다. 그리고 經書가 아닌 緯書에 편재함이 마땅함에 ‘易緯’의 마지막에 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sup>142)</sup> 「子部·術數」의 邵雍은 저명한 數學家이며 “物理之學”의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인재로 소개를 하면서 ‘안어’에서 「皇極經世書」란 그의 저술을 서명만으로 판단해서 儒家로 분류해서 안 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sup>143)</sup> 「子部·儒家存目」의 「明良交泰錄」의 ‘안어’에서 저자인 尹直의 행동은 유가 규범에 맞지 않지만 그의 저술에서 언급한 유가 사상의 내용은 학술에 적합하기 때문에 ‘儒家類’에 배치한다고 했다.<sup>144)</sup>

이상과 같이 ‘안어’는 「총목」을 구성하는 중요한 체례로 [범례⑩ 역주]의 언급처럼 ‘附注’의 형식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안어’는 고정적이고 일정한 형태의 체례는 없지만 필요성에 따라 <도표>의 독립된 13가지의 분류항목을 5가지의

「史部」也.”

141) 「總目·經部·尙書·案」: “薛季宣之贗古. 王柏·賀成大·胡一中之改「經」, 特黜而存目, 一以杜好奇之漸, 一以杜變亂古「經」之漸也.”

142) 「總目·經部·尙書·案」: 「尙書大傳」於經文之外掇拾遺文, 推衍旁義, 蓋即古之緯書. 諸史著錄于「尙書」家, 究與訓詁諸書不從其類. 今亦從「易緯」之例, 附諸經解之末.

143) 「總目·子部·術數·案」: “邵子既推數以著書, 則列之術數, 其亦更無疑義矣.”

144) 「總目·子部·儒家存目·案」: “直之進退, 未合儒者之道. 然其言則儒家之言, 列之「儒家」, 從其書也.”

범주로 서로 연결해 소통시키는 ‘通變’의 기능을 수행했다. 비유하자면 ‘안어’는 신체의 각 기관을 연결시키는 동맥과 정맥, 혹은 모세 혈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된 각 기관을 상호연관·연동시켜 일정한 방향과 균형을 갖게 했다. 즉 ‘안어’의 ‘互見’과 ‘互通’의 기능을 통해서 분류항목이 서로 다른 분류 범주의 ‘변통’으로 ‘서지통정’을 가능하게 했다.

## 6. 결 론

『凡例二十則』은 『총목』 체례의 내용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이며, 동시에 18세기 중국에서 시도된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의 청사진이다. ‘범례’는 사서편찬과 관련했고, 목록학적 기원은 사지목록의 ‘大序’에 있다. 이후 목록서의 체례가 분화하며 ‘大序’는 ‘序例’·‘敍錄’·‘凡目’의 형태로 발전했고, ‘總序’라는 독립 기능을 수행했다. 『총목』의 ‘凡例’은 20개의 조항을 통해 체계 서지학의 핵심이 되는 도서의 선별과 분류, 類目的 설치와 배열, 子目的 엄선과 書目的 배열, 著錄의 분석과 고증 및 ‘著錄’과 ‘存目’의 판별, 저술의 원칙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범례’는 중국 목록학 문헌 해제의 특성 외에도 原書의 流傳을 고증하여 善本과 足本 및 通行本을 엄선한 ‘원문서지학’과 ‘형태서지학’적 요소를 모두 보유했고, 이를 통해 종합적 성격의 목록 저술인 『총목』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범례’에는 『총목』 저술의 원칙 및 목적, 사상과 관련해 당시 정치·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과 논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총목』의 서지학적 기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 목록학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집대성하려던 “辨章學術, 考鏡源流”의 과정 이해가 전제되어 한다. 그리고 ‘欽定과 御覽’의 양면적 성격과 ‘公道大彰, 敦崇風教’의 정치적 구호는 당시 考據學 중심의 건국학파의 학술적 경향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필경 『총목』이란 저술이 청초의 학술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어’는 ‘범례’의 기능 중에 미진한 곳을 보완, 보충하면서 「총목」의 체례를 주석의 형태로 부연 설명했다. ‘범례’를 구성하는 13가지 분류항목과 ‘저술사상’·‘도서변위’·‘유례논증’·‘도서해제’·‘학술기원’의 5개 범주를 소통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기능했던 것이 바로 ‘안어’였다. 중국목록학의 구성 요소 중 ‘안어’의 역할이 다소 과소평가 되었던 원인은 아마도 고정된 체례나 사용 사례가 불규칙하고 정형적인 형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篇目·敍錄·解題·總序·小序 등이 커다란 바위로 비유한다면 ‘안어’는 이런 바위들이 더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모래와 자갈, 혹은 진흙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총목」에서 구현되고 있는 考據學의 학풍은 실은 5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안어를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안어’의 연구는 더욱 풍부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총목」 ‘범례’의 체계적인 설명에도 미진하거나 한반도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첫째, ‘범례’에는 ‘存目’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총목」에 수록된 ‘存目’의 총 수량은 무려 6,793種 93,550권에 달한다. 방대한 ‘존목’의 수량을 볼 때 수집된 도서가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 ‘존목’으로 분류되는지 그 준거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지 않다. ‘존목’ 도서에 대한 선별 準據를 체례 차원과 “聖諭” 및 “御覽” 등의 시대상황을 종합해 구체적 준거에 대한 분석이 요망된다. 둘째, 한반도 및 인접국의 저술 수록과 관련해서 ‘범례’는 “王化外臣, 不分疆界”의 태도를 취했다. ‘疆界’라는 것은 물리적 영토의 국경이 아닌 문화적 동질성의 강조로 파악된다. 이는 한반도와 중국은 오래전부터 “和而不同”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역사성을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총목」에 수록된 한반도 및 인접국의 저술은 어떤 것이 주로 수록되었고, 수용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明末清朝 중국에 유입된 西學관련 저술은 어떤 疆界로 파악했는지, 西勢東漸과 근대의 전야에서 「총목」이 지녔던 西學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요망된다.

<참고문헌>

- 四庫全書研究所整理. 『欽定四庫全書總目』(整理本). 中華書局, 1997.
- 左丘明. 『春秋左氏傳』. 北京大學出版社, 1999.
- 班 固. 『漢書·藝文志』. 中華書局, 1985.
- 令狐德棻. 『隋書·經籍志』. 中華書局, 1992.
- 顏之推. 『顏氏家訓』. 上海古籍出版社, 1980.
- 劉知幾, 趙呂甫校注. 『史通新校注』. 重慶出版社, 1990.
- 鄭 樵. 『通志·校讐略』. 中華書局, 1987.
-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上海古籍出版社, 1987.
- 馬端臨, 上海師範大學古典研究所點校. 『文獻通考』. 中華書局, 2011.
- 王堯臣. 『崇文總目』. 商務印書館, 1937.
- 章學誠 著, 王重民通釋. 『校讐通義通解』. 上海古籍出版社, 2009.
- 余嘉錫. 『目錄學發微』. 巴蜀書社, 1991.
-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上海古籍出版社, 2002.
- 程千帆. 『校讎廣義·目錄編』. 齊魯書社, 1998.
- 李致忠. 『三目類序釋評』.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 來新夏. 『古典目錄學淺說』. 中華書局, 2003.
- 周少川. 『中國目錄學』. 中州古籍出版社, 1996.
- 彭斐章外. 『目錄學研究文獻彙編』. 武漢大學出版社, 1996.
- 陳曉華. 『“四庫總目學”史研究』. 商務印書館, 2008.
- 陳祖武. 『乾嘉學派研究』. 河北人民出版社, 2007.
- 釋道宣 著, 이한정 옮김. 『廣弘明集』. 東國譯經院, 1999.
- 千惠鳳. 『韓國書誌學』. 民音社, 1993.
- 안춘근. 『韓國書誌學原論』. 범우사, 1990.
- 余慶蓉, 王晉卿 公저, 南台祐, 宋日基 公역. 『中國目錄學思想史』. 태일사, 2009.
- 홍석주 원저, 리상용 역주. 『역주홍씨독서록』. 아세아문화사, 2006.

서지학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2004.

켄트가이(R.Kent Guy), 양희웅 역. 『사고진서』. 생각과나무, 2009.

조영래. “『四庫全書總目』 史部の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서지학연구』 제 44집(서지학회, 2009). 491-527.

조영래. “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서지학연구』 제52집(서지학회, 2012). 155-192.

